

제434회 국회 (임시회·폐회중) **재정경제기획위원회회의록** 제 1 호
(경제재정소위원회)
(임시회의록)
국회사무처

일 시 2026년4월29일(수)

장 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16)
2.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66)
3.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71)
4. 전략수출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89)
5. 전략수출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336)
6.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93)
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95)
8.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97)
9.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22)
1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68)
1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17)
12.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15)
1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모경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77)
1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478)
15.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80)

상정된 안건

1.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16) 2
2.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66) 2
3.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71) 2
4. 전략수출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89) 2
5. 전략수출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336) 2
6.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93) 2
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95) 2
8.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97) 2

9.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22)	2
1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68)	2
1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17)	2
12.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15) ...	3
1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모경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77)	3
1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478)	3
15.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80)	3

(14시05분 개의)

○소위원장 정태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4회 국회(임시회·폐회중)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제1차 경제재정소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오늘은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5건의 법률안들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먼저 안건별로 전문위원의 보고와 정부 측의 의견을 듣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거친 후에 합의가 된 내용을 안건 심사 종료 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 발언 시에는 마이크를 사용해 주시기 바라며 배석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은 후에 발언해 주시고 발언 전에 소속, 직위와 성명을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임기근 기획예산처차관은 업무보고로 회의에 일시적으로 출석하기 어렵다는 요청이 있어 차관이 출석할 때까지는 김명중 기획조정실장이 대참하는 것으로 소위원장이 간사님과 협의하여 양해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16)
2.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66)
3.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71)
4. 전략수출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89)
5. 전략수출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336)
6.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93)
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95)
8.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97)
9.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22)
1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68)
1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17)

12.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15)
1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모경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77)
1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478)
15.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80)

(14시06분)

○소위원장 정태호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5항까지 이상 15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임명현 전문위원께서 소위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명현 먼저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김태선·최기상 의원 건입니다.

소위자료의 4쪽을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소위 심사 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상자산의 국경 간 이전에 대한 모니터링 제도과 관련해서 일부 용어를 명확하게 정비할 필요성이 제기되어서 향후 간사 간 협의를 통해서 결정하기로 한 바 있고요. 그 밖의 쟁점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아래 네모 보시면 모니터링 대상이 되는 가상자산 관련 행위를 정의함에 있어서 최은석 의원님안은 ‘이체’라는 개념을 쓰고요. 최기상 의원님안은 ‘거래’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서는 또 ‘이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지난 소위 논의 요지에서 이체, 거래, 이전 등 여러 용어의 개념이 명확치 않아 혼재되어서 해석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고요.

아래 검토의견 보시면 현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과 관련된 행위를 매매, 교환, 이전, 보관·관리, 매매·교환에 대한 중개·알선·대행 등 다섯 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3번 이전과 관련해서 시행령에서는 가상자산을 이용자 상호 간 또는 가상자산사업자 상호 간 또는 이용자와 가상자산사업자 간의 가상자산을 전송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정부가 모니터링하려고 하는 대상은 국경 간에 가상자산을 전송함으로써 외국환거래를 사실상 우회하는 효과를 갖는 행위로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이전의 개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7쪽, 그림으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법에서 가상자산 영업자의 영업행위가 매매, 교환, 이전, 보관·관리, 중개·알선·대행으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고 이 중에 정부가 규율하고자 하는 것은 이전 중에서 국경 간 이전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만 Gray Area라고 저희가 표시를 했는데 가상자산의 특성상 물리적 국경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실질적으로는 국경 간 이전과 동일한 효과가 있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서 나뉘어서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안 보시면 가목과 나목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정부 측 의견이요.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가상자산 법률과의 정합성 제고와 혼선 방지 차원에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규정된 ‘이전’으로 용어를 통일하는 제안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또한 각호를 통해서 동법의 적용 대상이 가상자산의 국경 간 이전임을 명확히 기술하고 규제 우회 방지를 위해서 국내거래소와 개인지갑 간의 이전도 모니터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점에서 정부가 생각했던 입법 취지를 충분히 반영한 대안으로 보고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위원님들 의견이요.

○박수영 위원 발의하신 위원님.

(「이전이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위원장 정태호 그러면 대안을……

○박대출 위원 잠깐만, 제가 의문이 좀 있어서……

지금 5페이지에 보면요 이전이라고 하는 것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서의 이전이라는 개념은 다섯 가지 사항 중 하나의 이전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시행령에서 설명하는 전송하는 행위라고 한 것은 이 시행령에 대해서 이런 전송한 행위로 범위를 제한한다 해 놓으면 1번, 2번, 4번, 5번도 여기 다 해당이 될 것 같아요. 매매, 교환도 이렇게 전송하는 행위 아닌가?

○전문위원 임명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게 옳습니다. 다만 이전이라는 범위에 다 포괄돼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하되 단서를 뒤서 국경 간에 이전하는 걸로 또 한정을 시킨 겁니다.

○박대출 위원 국경 간의 이전이라는 게 그러니까 국경 간의 매매나 교환, 매매·교환에 대한 중개·알선·대행의 형태도 국경 간 이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전이라는 개념이 지금 협의의 이전과 광의의 이전이 두 가지로 쓰이고 있다고.

○전문위원 임명현 이전의 방법으로 매매가 될 수도 있고, 말씀하신 취지는 맞습니다.

○박대출 위원 그러니까.

○전문위원 임명현 다만 ‘이전’이라는 용어를 대표성 있게……

○박대출 위원 ‘이전’이라는 용어가 두 가지 의미로 지금 돼 있어요, 이게 의미상으로는.

○전문위원 임명현 그래서 대안을 보시면 이전 중에서 대한민국과 외국 간에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행위로 이렇게 또 한정을 시켜 났습니다.

○박대출 위원 그러면 시행령 설명이 이거 가지고는 안 되지. 이것은 시행령 설명이 잘못된 거라고. 앞뒤가 맞지 않아요.

○진성준 위원 박대출 위원님 말씀은 저도 이해가 되는데 이를테면……

○박대출 위원 아니, 이거 논리상 그래요. 이게 구조가……

○진성준 위원 이전이 큰 포괄적인 개념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대가를……

○박대출 위원 협의의 이전과 광의의 이전이 달라요.

○진성준 위원 그러니까요. 대가를 지불하고 교환을 하느냐, 뭐 대가…… 그것은 매매가 되겠지요. 또는 사고팔고 하는 것은 매매고 대가를 지불할 때 교환이고 또 그런 것

없이 그냥 증여하거나 이런 경우도 이전에 해당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전은 크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외국환거래법에서 규율하고자 하는 것은 그게 매매가 됐든 교환이 됐든 또 어떤 형태의 거래가 됐든지 간에 가상자산이 국경을 넘어서 옮겨진 것에 대해서 모니터링 하자라고 하는 것이니까 협의의 개념으로 볼 게 아니라 광의의 개념으로 이전을 보는 게 옳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다른 분……

박대출 위원님, 다 말씀하신 건가요?

○박대출 위원 예, 그래도 저는 이게 납득이 안 가요. 이것은 용어가 다른 용어로 하든지 해야지 이전이라는 단어가 하나의 법체계에서 두 가지 뜻으로 설명된다는 것은 저는 이거 논리적으로 납득이 안 돼요.

○전문위원 임명현 여기 시행령에서는 이전이라는 것을 전송하는 개념으로 개념 정의를 설명해 놔습니다.

○박대출 위원 매매도 전송이잖아요. 전송 안 하고 매매가 있냐고. 교환 다음에 전송을 해야 매매지, 가상자산인데. 돈 들고, 보따리를 들고 와서 현금 주고받고 하는 게 아니라 다 이전을 해 갖고 전송을 해야지.

이게 나는 이 법체계가, 용어가 이해가 안 가요.

○진성준 위원 가상자산법을 바꿔야 될 문제 같아요, 박대출 위원님 문제의식이라면. 이것은 외국환거래법에서 문제를 삼거나, 그렇습니다.

○박대출 위원 용어 자체가 엄격히 구분이 되는 용어가 저는 필요할 것 같아요.

○박수영 위원 그것은 또 정무위 소관이지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진성준 위원 예.

○소위원장 정태호 이게 전문위원님이 대안을 만들어 주신 건데 설명을 한번 해 보실래요?

○전문위원 임명현 사실 매매, 매수 이런 다양한 행위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이전에 대해서는 기술적으로 개념 정의를 했습니다. 전송하는 행위입니다.

○박대출 위원 매매·교환도 전송을 해야 된다고.

○전문위원 임명현 그거를 다 포괄하는 거지요.

○박대출 위원 포괄하는데 또 안에는 이전이 들어가 있어요. 매매·교환·이전·보관·관리, 다른 개념으로 또 들어가 있다고요.

○전문위원 임명현 그러니까 전송하는……

○박대출 위원 그러니까 이전이 두 가지 의미로 쓰이고 있어요, 두 가지 의미로. 법체계에서 이게 있을 수가 있나요.

○진성준 위원 그러니까 그건 가상자산법이다 이런 말씀이지요.

○권영세 위원 이런 얘기로 이해하면 되지 않겠어요? 매도·매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두 축으로 이루어진 게 하나는 매도·매수 계약하는 게 있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물건이 넘어가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서는 구체적으로 물건이 넘어가는 그 이전 부분에 대해서만 특별히 규율하겠다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게 하면 합리적으로 해석할 수 있지 않겠어요?

○진성준 위원 매매도 포괄하는 거지요.

○권영세 위원 매매가 됐건 그전에 증여가 됐건 뭐가 됐든 간에 그것은 계약은 계약대로 따를 거고 그렇게 해서 그 결과로 가상자산이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니터링하겠다 이렇게 이해……

○박대출 위원 그건 이제 광의로 해석하는 거라고……

○진성준 위원 광의로 봐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대출 위원 광의로 해석하는데 이전이라는 용어가 협의로는 엄격히 매매·교환이나 보관·관리, 중개·알선 대행과는 다른 개념으로 또 하나 이전의 영역이 만들어져 있다고.

○진성준 위원 글썄, 그것은 가상자산법을 고민해야 될 문제 같습니다.

○박수영 위원 전문위원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는 제2조제2호다목에 있는 이전의 개념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혹시 법에서는……

○전문위원 임명현 예, 시행령에 정해져 있습니다.

○박수영 위원 시행령이 정해 놓은 거지요, 이 이전의 개념을.

○박대출 위원 그러니까 시행령에 정한 게 매매·교환도 똑같은 내용이라고. 매매, 교환도 시행령에서 규정한 전송하는 행위에 포함된다고.

○박수영 위원 그러니까 박대출 위원님 말씀……

○박대출 위원 하나의 가상자산주소에서 다른 가상주소로 전송하는 게 매매도 되고 교환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권영세 위원 여기 시행령 3조에도 그렇게 돼 있네. 같은 호에 따른 영업을 하기 위해서 가상자산을 이전한다는 거니까 같은 호에 따른 영업이라는 게 매도·매수·보관·관리 이런 걸 다 포함하는 거 아니예요. 그렇지요?

○전문위원 임명현 예, 포함될 수 있습니다.

○권영세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 규정상……

○박수영 위원 그러니까 진성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가, 나, 다, 라가 상호 배타적이지 않은 거예요. 다목 이전이 가, 나, 나를 포괄하는 개념을 넣어 놓으니까 이 법 자체가 지금 좀 잘못 만들어진 거지. 가, 나, 다, 라로 열거하려면 상호 배타적인 뮤추얼리 익스클루시브(mutually exclusive) 해야 되잖아요. 그게 안 돼 있는 상태의 이전이 지금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거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했고……

○전문위원 임명현 예, 맞습니다.

○박대출 위원 이게 지금 체계상 맞지 않는 거예요.

○박수영 위원 그것을 박대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골치 아프네.

○권영세 위원 해석은 가능한데 법체계상으로는 맞지 않지.

○박대출 위원 체계상 말이 안 돼.

○전문위원 임명현 체계상의 문제가 실제 집행할 때는 혼선이 그렇게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박대출 위원 아니, 스포츠 하고 축구, 야구, 배구, 농구 해야지 배구 해 놓고 배구, 축구, 농구, 배구 이렇게 들어가는 개념이 어디 있어. 말이 안 되는 거지, 그것은.

○소위원장 정태호 일단 이걸 보류해 놓고 넘어갑시다.

○진성준 위원 아니, 저는 조금 이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대출 위원님께서 제기하시는 문제가 무엇인지는 이해는 하겠는데 그것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방금 찾아보니까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정의규정이 있는데 거기에 ‘가상자산사업자란’ 해서 가상자산을 매도·매수하는 행위 또 가상자산을 다른 가상자산과 교환하는 행위 또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행위 이런 것들을 열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애당초 그런 문제의식이 충실히 반영되려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박대출 위원님의 문제의식에 입각해서 개정할 필요는 있겠으나 우리가 외국환거래법에서 규율하고자 하는 것은 매매나 교환이나 이전을 다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국경을 넘어가서 가상자산이 옮겨지는 행위를 모니터링하자는 것이니 외국환거래법을 이렇게 규정하는 것에는 별문제가 없다는 게 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게 층위가 다른 문제다. 박대출 위원님의 문제의식을 살리려면 그건 가상자산보호법을 다시 검토해 봐야 될 문제이고 그 문제의식과 별개로 외국환거래법을 정리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이거 가지고 표결할 수도 없고……

○진성준 위원 아니, 그래서 제 의견을 박대출 위원님께서 한번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박대출 위원 그러더라도 법체계에서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를테면 큰 이전, 작은 이전이라든지 구분이 돼야 돼, 이 법은. 저는 동의할 수가 없어요. 똑같은 용어가 두 가지로 쓰여서 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다른 법에 돼 있더라도 다른 법의 체계가 잘못된 것을 전제로 해 갖고 우리가 법을 새로 만들면 안 되는 거지요. 그것은 그 법부터 고쳐야 되는 거고.

아니, 스포츠라 분류를 하고 축구, 배구, 농구, 야구 이렇게 분류를 하지 스포츠가 아니라 야구 해 놓고 야구 뒤에는 축구, 배구, 야구, 농구라고 들어간다 이렇게 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야구를 두 번 쓸 필요는 없는 것 아니에요. 이전도 두 번 쓸 수는 없는 거지요.

○소위원장 정태호 그런데 박대출 위원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는 매도·매수·교환 이런 것들이 다 이전으로 포함되는 거잖아요. 그런 행위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이게 다목이 되는 거고, 지금 대안으로 제시한 것은 뭐냐 하면 ‘가상자산이전업무란’ 해 가지고 정의를 하고 있잖아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행위 중에서 대한민국과 외국 간에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행위를 하는 것’ 그리고 ‘가목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그러니까 이 법에서 이전이라는 개념을 명확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충돌이 될 것 같지는 않은데, 이게 규정을 명확하게 하지 않은 상황이면 이전이라는 용어가 범위의 문제로 다가올 수 있지만 여기서는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있어 가지고 법체계상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어떨까요?

○권영세 위원 제가 보기에요 그래서 최기상 의원이 정의규정 해서 이렇게 복잡하게 매도·매수·교환·이전·보관·관리 이런 것을 다 포함해서 이전하는 것을 표현해 놔는데 어쨌든 외국환관리법상에 규제하겠다는 목표 자체는 가상자산법에서 조금 체계를 이상하게 해 놔지만 절충안을 가지고 충분히 가능한 하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최기상 의원은 그래서 이렇게 복잡하게 해 놓은 것 같아요.

○박수영 위원 최기상 의원님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그대로 준용해서 다 나열해 놓으신 것 같고 우리 법에서는 가상자산이전업무라는 새로운 개념이지요. 그러니까 가상자산이전업무라는 단어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안 나오니까 이 업무에 대한 정의를 하고 들어가는 거라서 그 정의는 외국과의 거래를 말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지금? 그렇다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는 다소 문제가 있으나 우리가 개념을 정의하고 가는 거고 이 개념은 이용자보호법에 안 나오는 거기 때문에 새로운 개념을 만들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 아니냐. 그렇다면 이렇게 가도 큰 문제는 없고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저쪽에서 고쳐야 되는 거지 우리가 지금 건드릴 수 없는 것이고, 그걸 전제로 한다면 이 정도 전문위원님 대안은 잘된 것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새로운 개념을 정의했으니까.

○권영세 위원 사실 최기상 의원안도 이게 똑같은 게 아니라 다 불러서 그래서 교환·이전·보관·관리 등을 통해서 국경 간 이전하는 것 이런 식으로 정의를 새롭게 시도를 했던 거지. 그런데 전문위원 검토는 가상자산법의 문제는 있지만 그중에서 이전 부분을 뽑아서 쓰면 되겠다 이래서 고친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전문위원 임명현 예.

○진성준 위원 그러면 한번만 더 확인해 보십시오.

여기 보면 ‘외국 간에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행위’ 앞에 ‘가상자산법 2조 2호다목에 따른 행위 중’ 그랬는데 이 다목은 이전만을 얘기하는 거고 가목에는 매도·매수가 규정돼 있고 나목에는 교환이 규정돼 있어요. 그러니 국경 간에 이전되는 매매·교환도 이 이전에 다 포괄되는 겁니까, 이렇게 해 놓으면?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예, 전송을 하면 포함이 됩니다.

○진성준 위원 그래요? 매매 또 교환을……

○권영세 위원 매도·매수의 결과로 이전이고 나면……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그래서 괜찮다는 말씀입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진성준 위원 그래요?

○전문위원 임명현 다 포괄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예. 왜냐하면 매도·매수를 하더라도……

○진성준 위원 아니, 그럴 것 같으면 구태여 제2조제2호다목이라고 표현할 게 아니라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위 중 대한민국과 외국 간에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행위’로 해 놓으면 매매가 됐든 교환이 됐든 그냥 이전이 됐든 다 포괄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다목’이라는 말을 삭제하자는 거지요.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협의가 아니라 광의다.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저희가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다목을 지정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가든 나든, 매도든 교환이든 그것을 하는 과정에서 전송하는 행위가 있다면 다로 다 잡힙니다. 즉 다만 할 수도 있고요 가를 통해서 다룰 할 수도 있고 저희는 그것을 다 잡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어차피 가를 하더라도 다가 따라가면 다목에 따른 이전을 저희가 잡았기 때문에 그것 다 포괄된다, 그러니까 저희는 다 모니터링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저희가 집행할 때는 문제고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대출 위원 지금 이 두 가지 법이요 다른 개념으로 이용이 되고 있어요. 보세요. 여기 지금 외국환거래법에 나오는 가상자산 이전 업무라는 것은 국경 간 이전 내지 거래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이전 중의 국경 간.

○박대출 위원 그러니까 국경이라는 의미를 전제로 한, 국경을 전제로 한 국경 간 이동 내지 거래의 의미의 이전이라고. 그렇지요?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예.

○권영세 위원 다목이?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아니요, 다목에 붙여서 국경까지 붙였기 때문에……

○박대출 위원 다목이 아니라 그거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있는 다목이고 법 체계가 다르다고요.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이 23조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예.

○박대출 위원 우리가 지금 심사하는 이 법의 23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이전이라는 것은 국경이 전제라니까, 국경 간 이전이라고.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이전 중의 국경 간인 줄 알았습니다.

○박대출 위원 그러니까 외국환거래법에서 다루는 이전 업무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광의의 이전, 협의의 이전 이 세 개가 지금 따로 놓고 있는 법이 돼요.

○소위원장 정태호 이게 지금……

○박대출 위원 복잡하지만 체계는 그래요. 의미는 있지만 법 체계가 이렇게 같은 용어가 뒤죽박죽되면 안 된다고.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결과적으로 박성훈 위원님 말씀처럼 외국환거래법에서 새로운 개념을 창설하는 겁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아니, 이게 개념을 이해하는 게 가·나·다가 가·나도 다에 포함……

○박대출 위원 취지는 이해해요.

○소위원장 정태호 잠깐만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2조 2항에 가·나·다가 가·나도 다에 포함되는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상자산 매도·매수·교환 이게 다 이전 행위잖아요. 그런데 그 외의 행위가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를 만들어서 그것을 포함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이렇게 규정을 해 놓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나·다가 다로 다 포괄된다고 보면 다 중에서 국경을 이동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지금 규정을 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전문위원 임명현 예, 정확히 맞습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그래서 오히려 지금 대안처럼 제2조제2호 다목에 따른 행위 이렇게 했을 경우는 매매 이런 것들 다 포함해서 국경 간 가상자산 이전하는 행위, 국경을 뛰어넘는 부분이 다 포함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전혀 문제가 없어요.

○김영진 위원 저번에도 길게 한번 얘기했었는데 사실은 가·나 포함하고 다, 그러나 다가 가장 큰 집합이기 때문에 가와 나가 아닌 다른 행위도 존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한마디로 매매나 매수·교환이 아니라 불법적으로 외국에 보낸다든지 이런 경우까지 다 포괄적인 개념을 해서 이전이라는 개념으로 쓰게 되면 다목으로 하게 되면 전체 이전 행

위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그에 따라서 관리한다 이렇게 좀 포괄적으로 보는 게 합리적인 것 같아요. 싸울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박대출 위원**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보자라는 의미와 이 법의 체계에서 엄격히 해석해야 될 문제는 전혀 다른 문제인데 그런 취지를 이해 못 해서 제가 자꾸 문제 제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2조와 3조도 충돌이 돼요.

보세요. 다 항목이라는 것은 ‘이전하는 행위 중’, 이 이전하는 행위라는 게 광의의 이전으로 쓰인 거예요. 거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라고 제한을 시켜 가지고 협의의 이전이라는 의미의, 도표상에 있는 의미를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로 제한을 했는데 그 이전의 범위라고 시행령에 들어오는, 다목에서 정하는 설명을 보면 시행령 3조에는 쪽 설명이 돼 있잖아요. 그래 가지고 ‘간에 가상자산을 전송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렇게 돼 버려 갖고 이 포함을 하는 하면 가·나가 포함이 돼요, 여기서.

○**진성준 위원** 그것도 포함해야 맞지요.

○**박대출 위원** 포함이 돼 버린다고. 따로 떼어 놓고, 2조는 따로 떼다 해 놓고 3조에는 거기에 따로 떼 게 뭐냐 하니까 붙인 걸 또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진성준 위원** 그렇게 해야 맞다고요.

○**재정경제부국제금융국장 이형렬** 재경부 국제금융국장……

○**소위원장 정태호** 박수영 간사님.

○**박수영 위원** 가만 있어 봐, 그러면 차관님이나 전문위원님 중에 누가…… 라호 있잖아요. ‘보관 또는 관리하는 행위’ 이것은 이전에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우리 담당 국장이 말씀……

○**박수영 위원** 예, 담당 국장님인가요?

○**재정경제부국제금융국장 이형렬** 국제금융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혼란이 발생하는 이유가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2조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업으로서 할 수 있는 행위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자가 업으로서 할 수 있는 행위를 나열하다 보니까 첫 번째, 가는 뭐냐 하면 자기 계산으로 가상자산을 사거나 팔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계산으로 가상자산을 사거나 팔면 그에 따라서 이전·전송이 발생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나 같은 경우도 교환을 하게 되면 내 가상자산을 자기 계산으로 다른 사람의 가상자산과 업자가 교환을 할 수 있다는 말이고요. 그 결과로서 이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 같은 경우는 그런 원인을 묻지 않고 그냥 가나 나 같은 원인 행위가 있어서 이전이 발생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고객이 와서 ‘내 것 좀 보내 주세요’ 했을 때 이전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라 같은 경우는 그냥 보관 또는 관리만 하고 있으면 이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업자가 업으로서 할 수 있는 행위를 나열한 것이고요. 그래서 매매와 이전은 엄연히 분리가 되는 것이고요.

저희 법에서는 그런 것을 따지는 게 아니라 원인이 무엇이든 간에 그냥 A라는 사람에게서 B라는 사람에게로 가상자산이 옮겨졌으면 이게 국경 간에 발생하면 무조건 모니터

링하겠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요.

○박대출 위원 아니, 일을 하는 데 문제야 없겠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법 체계가 지금 따로 노는 법이 돼 있다는 거예요. 이전의 범위라고 지금 정해 놓은 게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2조와 3조가 충돌이 되고 이 법은 외국환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전 업무와 또 충돌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전 업무라는 것은 표하고 설명이 또 달라요. 그냥 국경 간에 이동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재정경제부국제금융국장 이형렬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용자보호법……

○박대출 위원 영업 행위라고 그것 구분이 되는 게 아니라 이동하는 형태가 어떤 형태로, 소유권이 어떤 식으로 되느냐의 문제로 그냥 기속이 될 수는 있는데 결국 이전이라는 용어가 이렇게도 쓰이고 저렇게도 쓰이는 법 체계가 돼 버렸다는 게 문제예요, 이 법이. 가상자산 이전 업무 그냥 국경 간에 가상자산이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것 다 우리가 하는 법이다…… 법 취지를 몰라서 하는 게 아니라고요.

○소위원장 정태호 박수영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박수영 위원 지금 이렇게 논의해 가지고는 한이 없을 것 같고요. 나중에 정회할 때 조금 논의를 했으면 좋겠고.

제가 보기에는 정의 조항에 최기상 의원님이 정의 넣어 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가상자산 이전이란 여기서 이전·보관·관리는 해당이 안 된다고하는 거니까 빼 버리는 거지요. 그러니까 ‘가상자산 이전이란 가상자산의 매도·매수·교환 등을 통하여 가상자산의 가치를 대한민국과 외국 간에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개념을 정해 놓으면 보다 분명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논의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우선은 좀 뒤로 돌려 가지고 작은 규모를 논의를 한번 하고 그러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소소위로 보내든지 조금 소규모로 논의해도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그럼시다.

○김영진 위원 충분하게 뜻을 전달했으니까.

○소위원장 정태호 예, 충분히 논의를 했으니까.

○박대출 위원 최기상 의원안은 여기서 여러 가지를 설명을 하고 구분이 되는 용어예요.

○소위원장 정태호 박대출 위원님, 이것은 박 간사님하고 저하고 책임지고 정리하도록 할 테니까 따라 주십시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 소위원회 심사 결과는 참고자료인가요?

○전문위원 임명현 예.

○소위원장 정태호 이것만 결론 내면 이거는 다 정리된 거잖아요.

○전문위원 임명현 정리 끝났습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예, 그다음 보고하실까요?

○전문위원 임명현 다음, 전략수출금융지원에 관한 겁니다. 49쪽입니다.

자료 54쪽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소위 논의경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청회 실시 후에 소위 재논의 필요에 대해서 언급하셨고요. 입법 시급성을 감안해서 조속한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주셨었고 기여금 부과에 따른 수출경쟁력 약화가 우려되며 산업부·업계 우려를 감안해서 법 필요성에 대한 근본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기금 설치에 앞서서 수은의 여신공여한도를 고치는 방법으로 문제 해결이 가능한지도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오전에 공청회 실시했는데 논의 경과는 별도 자료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 자료 보시면 진술인 요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법 제정 및 기금 설치의 필요성과 관련해서 권현철 진술인은 대규모·저신용국 방산수출을 위해서는 구매자금용, 보증 지원, 절충교역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고요. 박인용 진술인은 방위산업의 특수성을 반영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방안 검토 필요하다는 의견이었고, 박창균 진술인은 기금 설치 시 수은 여신공여한도 등 정책금융기관 규제 우려 없이 정책 목적 달성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안상남 진술인은 방위산업 발전을 위한 기금 조성 자체에는 동의하지만 부과체계와 사용처의 적정성이 보장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기금의 목적 및 용도와 관련해서 박 진술인은 방산기업 납부 기여금의 용도를 방산 분야 지원으로 한정하거나 방산 분야에 특화된 법률을 제정·운용하는 등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기여금 부과의 필요성과 관련해서는 권 진술인은 기여금 부과를 통한 수출절충교역 지원 유상화가 수익자 부담 원칙이나 형평성 차원에서 타당하다고 보았고요. 박인용 진술인은 가격인상 또는 수익성 악화에 따라서 수출경쟁력 저하가 우려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박창균 진술인은 기금 수혜자인 수출기업이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것은 수익자 부담의 원칙과 부합한다 이런 의견 주셨고, 안상남 진술인은 영업이익률에 비추어 볼 때 기여금이 과도하여 향후 수출경쟁력 저하가 우려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기여금 부과기준 및 부과요율과 관련해서 권현철 진술인은 제정안의 부과요율(3~5%)은 해외 사례 고려 시 적정하고 기업도 감내할 수준이라고 보았고, 박인용 진술인은 부과요율의 중요 요소를 법안에 명시하고 기업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해서 사업에서 손실을 입은 경우 등에 부담을 조정·완화할 수 있는 장치를 둘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안상남 진술인은 현재 방산수출 계약에는 절충교역 이행에 따른 비용이 이미 수반되고 있으므로 5% 수준의 기여금 추가 납부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과 관련해서 나온 의견들입니다.

기금 설치 및 기여금 부과 필요성과 관련해서는 정부 지원이 들어가는 다른 수출산업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의견 주셨고, 방산업계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 지원한다는 점에서 타 산업군과 차이가 있으므로 지원에 따른 기회비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고, 정부나 수출금융기관이 구매자금용에 따른 이자수입으로 비용을 충분히 상쇄할 수 있다고 본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K9 자주포 가격 인상폭 등을 고려할 때 실제로 방위산업체들이 국가에도 상당

부분 기여하고 있으며 위험이나 비용을 정부나 수출신용기관이 다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원전, 전력산업 수출, 건설플랜트 등도 전략수출에 해당하므로 방위산업에 국한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도 주셨고요. 방산업체 영업이익률과 기여금 부과요율을 고려할 때 기여금이 기업에게 부담이 될 우려가 있으며 방산업체는 아직 부품 및 기술의 국산화·고도화 등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투자가 필요한 시점이고 부담금 부과 시 가격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기존 지원제도와 차별화 문제를 또 제기를 해 주셨습니다.

기존 수은, 무보 지원제도를 보완해서 충분히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고요. 대규모·장기·신시장의 범위가 모호하므로 계정 목적 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고, 전략수출의 범위가 지나치게 모호하고 기존 수은, 무보와의 역할 충돌과 비효율이 우려된다는 의견도 제시해 주셨습니다.

기여금의 부과 요건 및 부과요율 문제와 관련해서 기여금이 압류공매물납까지 규정되어 있는 등 사실상 준조세 성격이 있으므로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고 위험도나 실제 혜택 수여 정도 등을 고려하지 않고 수출기업들에게 일률적으로 기여금을 부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다음, 기금의 지원대상과 관련해서 방산기업이 납부한 절충교역에 따른 기여금을 다른 수출기업 지원에 사용하는 것은 수익자부담원칙에 위배된다는 의견하고 지원 기업에 대한 사전·사후 평가 절차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주셨습니다.

그리고 방산수출진흥기금법안과의 중복 문제입니다. 국방위에 계류 중인 동 법안과 중복 방지를 위해서 법안 간 조율·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여러 위원님들이 제시해 주셨습니다.

기타 의견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소위 자료로 돌아가서 법안 전체 설명은 지난 소위 때 했는데 이번에는 조문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8쪽에 총칙과 관련해서 60쪽을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60쪽에 제1조 목적 조항입니다. 목적 조항에서 한정애·안도걸 의원님 안은 ‘대규모, 장기, 신시장 등’ 해서 신시장이라는 개념이 있었는데 신시장이라는 개념이 모호하기 때문에 이 부분 삭제하는 의견으로 수정의견 냈습니다.

그리고 아래 2조 2호에 보시면 전략수출의 개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대규모, 장기 수출 등’을 포함시켰고 또 세부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그 부분 추가했습니다.

다음, 62쪽입니다.

정의에 6호를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낙찰조건부 지원도 추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5호를 보시면 국내 정책금융기관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국내라는 단어는 굳이 필요가 없다고 봐서 뺐습니다.

다음, 63쪽부터는 전략수출금융기금의 설치에 관련된 내용인데 자료에 67쪽 조문 자료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도걸 의원님 안 보시면 제5조의 3호가 한정애 의원님 안하고 다르게 더 추가돼 있음

니다. 3호는 전략수출금융 지원에 따른 사업으로 회수한 자금을 재원에 넣는데 이 부분 합당하다고 보아서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68쪽에 보시면 2항의 1호에 한정애 의원님 안하고 안도걸 의원님 안은 ‘대규모, 장기, 신시장 등 전략수출’ 해서 앞에 부연설명이 있었는데 이미 정의 조항에서 전략수출 개념을 명시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뺐습니다.

다음, 70쪽입니다.

한정애·안도걸 의원님 안은 제5조의2에서 산업생태계지원계정의 재원으로서 1호를 보시면 기술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정애 의원님은 추가를 했는데 안도걸 의원안에서는 이 부분을 삭제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기술료를 여기 재원으로 끌어 쓸 필요가 있는지는 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71쪽입니다.

위에 1호에 보시면 중소·중견 수출기업의 기술 수출역량 강화를 위한 투자라고 해 놔는데 투자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괄호 부분을 추가했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76쪽에는 전략수출금융기금채권의 발행과 관련된 사항인데 이 부분은 따로 수정의견은 없습니다.

그리고 79쪽에 보시면 자금지원 및 전략수출금융기금운용심의회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81쪽입니다.

한정애·안도걸 의원님 안은 제9조에 단서 조항이 있어서 ‘전략수출금융기금운용심의회에서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심의회를 생략할 경우에 기금 운용의 투명성에 문제가 있을 걸로 그래서 이 부분 단서를 삭제하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음, 83쪽입니다.

83쪽 위쪽에, 6호를 추가했습니다. 자금지원에 관한 사항이 심의회 심의 의결 사항임을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3항을 보시면 3항도 심의회 회의에 대한 회의록 작성 의무를 추가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84쪽부터는 전략수출상생기여금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90쪽입니다.

조문 자료를 보시면 제11조에서 기여금 납부의무자에 관련된 조항이 1항에 있는데 수정의견 보시면 ‘전략수출 계약이 체결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이렇게 해서 전략수출과 관련된 계약으로 한정시키는 것이 수익자부담원칙에 보다 충실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논의가 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아래쪽에 보시면 괄호 부분에 ‘제3호의 경우에는 정부 또는 공공기관의 수출산업협력 지원 금액’ 해서 공공기관이 포함된다는 것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 91쪽입니다.

제2호의 낙찰조건부 지원은 정의 조항으로 뺐기 때문에 간략하게 낙찰조건부 지원으로 자구를 수정했습니다.

다음, 92쪽입니다.

92쪽에 제3항에서는 중소기업·중견기업에 대해서는 기여금 일부를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 수정의견 보시면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3호를 추

가했습니다. 그 밖에 수출계약의 특성을 고려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할 경우에는 일부 감면을 떠나서 아예 제외하는 경우도 추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최근에 많이 나온 원전의 역외보조금 관련해서 원전을 제외할 수 있는 근거를 이 3호를 통해서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95쪽입니다.

제7항을 추가했습니다. 납부의무자의 이의신청 근거를 마련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96쪽입니다.

제9항 추가해서 타 산업 분야에 대한 교차보조 우려를 감안해서 출자·투자할 때 기여금 납부자의 산업별 비중을 고려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였습니다.

다음, 98쪽부터는 보칙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료 103쪽입니다.

제17조의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조항을 추가했습니다. 심의회의 위원들이 공무원 의제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104쪽은 부칙인데 106쪽 보시면 부칙 제2조를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수출입은행이 심의회의 구성 등의 준비행위가 필요할 것으로 봐서 제2조를 추가했고, 한정애·안도걸 의원님 안의 제2조 단서에 보시면 ‘이 경우 수출금융기금운용계획이 심의·확정된 것으로 본다’ 조항이 있는데 기금운용계획의 확정권은 국회의 권한 사항이므로 맞지 않다고 봐서 단서를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107쪽에 4조부터 5조, 6조 이하는 정부납부기술료를 이 기금의 재원에서 삭제하려면 이 부분 같이 조정해서 삭제하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정부 의견 말씀 주십시오.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기본적으로 저희는 공청회에서 기금의 도입 취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에 있었는데 많은 의견들 중에 보면 기업의 부담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담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조문별로는 지금 다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길게 이야기하셔서 필요하면 조문의 의견도 다 같이 한번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여금 부과에 따른 기업 부담 여부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은 현재 구매자금융과 절충교역이 수반된 수혜 기업에 한정적으로 부과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체 수출금융이 한 해 350조 정도 되는데 그중에 구매자금융은 한 20조 정도 되고요. 이 중에서도 수출계약을 하기 전에 이미 계약과 결부되어서 정부의 지원이 반드시 일어나야만 계약이 체결될 걸로 예상되는 그런 경우에만 해당해서 한정적으로 부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부과요율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법상 1% 한도 내에서 운영을 하기로 합니다만 기본적인 요율은 0.5로 하되 다만 여기 위원님들 의견처럼 신용도나 기간에 따라 차등을 둘 수 있기 때문에 추가로 요율을 더 줄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고요. 기본 요율 0.5%의 경우에 기업의 실제 부담에 대해서 살펴보면 원래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봤을 때 대체로 보면 특성 사를 이룸 하기 어렵지만 수출 관련해서는 영업이익률이 30~40% 나오지만 그걸 저희가 발라낼 수 없기 때문에, 한 회사의 전반적인 영업이익률을 보면 매출액 대

비 한 20% 정도의 이익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가 0.5를 부과했을 때 실제 줄어드는 것은 전체에서 그 비율 중에 0.1% 정도 하락하는 포인트다. 예를 들어 22.1이면 그게 21.0이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 충분히 부담이 가능한 사항이고 오히려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 기금이 없을 경우에, 최근에 계속 일어나는 상황이 워낙 수주금액이 크다 보니 수은하고 무보에서 이걸 감당을 다 못 하고 있다. 결국 그 기관의 동일인 여신한도 등으로 인하여 또 재정적 여건의 한계로 인하여 지원을 못 하는 상황보다는 차라리 이 기금이 등장해서 오히려 일정한 기여금을 내더라도 결과적으로 수주를 따내는 데 도움이 되는 게 저희들이 볼 때는 훨씬 더 국익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경우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납부 유예나 분할 납부, 감면도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율 부분은 그렇게 해서 논의를 할 수 있다고 보고요.

전문위원님 말씀 중에 페이지별로 쪽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60페이지 보시면 목적 조항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목적 조항에서 신시장을 제한 것은 저희도 그 모호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은 좋은데 등 자까지 같이 빼는 것보다는 등 자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여기 산업부와 저희가 협의한 문구가 하나 있습니다. ‘등 수출금융 수요에 대응하여’, ‘하고’에서 끝을 내는 게 아니고 ‘하여 정책금융기관의 기능을 보완하고’라고 해서 이 기금이 기존의 수은, 무보의 영역과 관련됐을 때 보완적으로, 예를 들면 저희는 장기 또는 어떤 표현에서는 저신용국가에 대해서 좀 더 집중을 하고 아까 전에 말씀 주신 대규모의 경우에는 수은, 무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서 저희들에게 협조 용자, 같이 나가자라고 할 때 저희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용도로 하기 때문에 이 목적 조항에 보완성의 의미를 담아 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산업부 의견을 받아들여려고 합니다.

그리고 2조 정의에 2호의 전략수출에 대해서 전문위원님께서 저희가 말하는 실제로 지원하려는 대규모, 장기 수주 등을 여기서 규정을 하셨는데요. 저희는 여기서 규정하는 게 아니고 뒤에 있는 5조나 6조의 기금의 용처에 이것을 규정을 하고 여기서 전략수출은 현행처럼 크게 전략수출의 개념적 정의만 두는 것이 필요하다. 실제로 운영할 때 차이가 나는 건 뭐냐 하면 상생기여금을 부과할 대상이 만약 이 정의 조항에서부터 좁혀지면 실질적으로 절충교역이나 정부의 수출금융이 결정적으로 이게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 수출 지원임에도 불구하고 이 범위의 지원 대상이 아닌 범위에까지도 할 수 없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기여금은 수은이 직접 주더라도 수은에 준 것이 수주의 결정적 요건이 된다면 그에 대한 이익은 일정 부분 국가로, 기여금으로 받아들이되 그 기금의 톨을, 받아 낼 그릇을 저희 법에 뒀서 기금으로 보고 그렇게 해서 지원은 대규모나 장기나 저신용국가에다가 지원하는 것을 필요로 한다라는 생각입니다.

이게 왜 차이가 나냐 볼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수출금융을 통해서 이익을 보는, 실질적으로 현재까지 리스크를 부담하지 않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 일정한 부분 국가로부터 환류시켜서 이 돈으로 수출금융도 하고 창업 생태계, 중소기업 분야도 확대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모든 수출금융 지원받은 기업들이 혜택을 보게 되는 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 기금에서 그러한 여력을 좀 더 흡수해 주면 수은, 무보도 다른 수은, 무보가 스스로 지원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지원할 여력이 늘어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동일한 효과를 가지기 때문에 정의 조항에서는 그대로 두고 지원 용처에 이것을 두기를 저희들은 희망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일단 하나씩 정리하고 가지요.

위원님들 의견이요, 목적 부분에 대해서.

○박수영 위원 차관님 아까 말씀하실 때 구매자금융과 절충교역 두 가지 다 적용된 소위 앤드(and)를 한정적으로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아니요. 오어(or)입니다.

○박수영 위원 오어는 원래도 오어잖아요. 그런데 한정적으로 적용한다는 건 무슨 얘기지요? 처음에 한정적으로 적용하겠다고 하면서 ‘구매자금융과 절충교역을 전부 다 했을 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아닌가요?

오어는, 지금도 오어잖아요.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예, 지금 오어입니다.

제가 말한 것은 정의 조항에 넣느냐 아니면 기금의 적용대상에 정의를 넣느냐 이것에 대한 차이를 말씀드렸습니다.

○박수영 위원 기업의 부담금 얘기하면서 이것을 앤드로 하기 때문에 부담이 크게 안 될 거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으로 저는 들었는데 아닙니까?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그것은 아마 제가 발언을 잘못된 것 같습니다.

○박수영 위원 그래요?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구매자금융이나 절충교역을 받은 분들에게……

○박수영 위원 오케이.

그러면 기업의 부담이 줄어든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겁니까?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줄어든다는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게 기업의 영업이익률에 미치는 영향이 예를 들어서 만약에 21%라고 하면……

○박수영 위원 자, 그것도 제가 질문할게요.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거기의 0.1 정도를 줄이는 효과가 있거든요.

○박수영 위원 영업이익률이 20% 넘는다고 하는 숫자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아까 공청회 할 때 진술인들은 3% 내외다, 방산기업의 영업이익률이 2.5 내지 3.5% 정도밖에 안 된다 이랬는데 차관님은 지금 20%를 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의 0.5%를 하면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그것의 0.1%입니다.

저희는 현재 작년 기준으로 영업이익률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사명을 쉽게 말씀드리는데 A사는 21.23, B사는 17.4.

○박수영 위원 그러니까 차관님은 작년 기준이라는 것이고 오늘 진술인들 얘기한 것은 아마 10년이나 평균으로 했을 거예요. 작년에 러우전쟁 이후에 수출이 늘어서 영업이익률이 올라갔을지도 모르지만 그 한 해를 기준으로, 아시다시피 방산기업이라는 게 수십 년 동안 적자를 봐 왔던 회사들입니다. 그 전에, 러우전쟁 이전에는 2019년에만 흑자를 봤다고 아까 진술인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러우전쟁 때문에 반짝 이익을 봤는데 그것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이건 좀 안 맞는 것 아닌가요?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실제로 만약에 수주가 줄면 저희가 주는 지원액도 같이

줄 거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숫자를 갖고 있지 않더라도 저희들이 볼 때는 그 수출 부분에 대해서는 0.4 정도를 내리고 그 회사가 전반적으로 다른 데 큰 이익을 얻었다면 0.1 정도를 내리는 효과라고, 어떤 숫자라도 그 정도에서 줄 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대출 위원 거기에 덧붙여 가지고 같이 답변해 주세요. 영업이익률하고 수익률하고 어떻게 달라요?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영업이익률은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의 비율로 말씀드린 거고요. 수익률은 아마 투자한 금액 대비 얼마나 벌었느냐 이런 개념으로 저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대출 위원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이 20%라는 것도 이해가 안 가고, 작년엔 21%, 22% 그러는데 그 수치도 저는 이해가 안 가는 수치고……

○소위원장 정태호 잠깐만요. 여기 총칙의 목적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건 나중에 기여금 할 때 얘기하면 되고 지금 목적, 총칙 부분만 우선 정리를 하면서 가야 되니까.

○권영세 위원 이게 지금 방산하고 원자력 외에 또 어디에, 어떤 종목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까?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예를 들어서 철도·차량을 하더라도 그런 경우에도 저희가 지원하는 경우에 아마 그렇게 저희가 금융을 주지 않으면 아예 저희를 선택하지 않는 그런 조건이 걸릴 수 있는 수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수영 위원 아니, 원전, 조선, 해양 플랜트 이런 것 한다는 것 아니에요?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플랜트도 있습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제1조(목적)에 대규모·장기 수출금융 이게 수정인데 대규모·장기 등……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등’ 자를 넣고요.

○소위원장 정태호 등을 넣어 달라는 거고.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그리고 보완성이라는 문구를 넣어 달라는 게 산업부의 요청이고 저희가 수용했습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그렇게 가능해요? 그렇게 정리하면 되나요? ‘등’ 넣는 것 찬성이에요?

○차규근 위원 일리 있어 보이는데요.

○진성준 위원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 ‘대규모·장기 등’ 이렇게 들어가는 건 좀 어색한 것 같아요. 그 문안을 다듬어야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뜻인지는 알겠어요.

○소위원장 정태호 장기 수출 등.

○박대출 위원 제정법을 처음 만들면서 ‘등’ 자를 넣어 놓고 이랬다 저랬다가 무슨 고무줄끈 만들면 안 되고.

○권영세 위원 그러면 취지가 들어가게 문구는 잘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박대출 위원 이것 지금 다 논의할 수 있어요? 나 이것 한 일주일도 걸려도 다 못 할 것 같은데. 한 항목당 한 시간씩 걸릴 것 같은데.

○소위원장 정태호 아니, 하는 데까지는 일단 끝내야지요.

○권영세 위원 이 방산이나 지금 얘기했듯이 다른 플랜트나 조선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스킴(scheme)은 똑같은가요?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아닙니다. 저희 금융지원이 전제가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것 없이 저희들이 사업자 간의 계약을 맺는데 금융을 도와주면 좋겠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는 저희가 적용하지 않을 겁니다.

○권영세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도와 달라고 요청이 왔을 때 하는 방식은 거의 똑같다 이건가요? 구분해서 할 필요 없이 그렇게 묶어서 해도 상관없다는 건가요? 방산 경우랑 다른 부문의……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예. 업종별로 차이는 없고 그런 것은, 스킴은 같은 스킴입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대규모·장기 등 수출금융 수요에 대응하고……

○진성준 위원 대응하여.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정책 금융기관에 대응하여 정책금융기관의 기능을 보완하고.

○권영세 위원 여태까지 수은이라든지 이런 것의 능력이 제한돼서 이게 좀 문제가 있기는 있어 왔는데, 그런데 수은에서 지금 연구용역을 실시해 가지고 7월 정도면 나온다고 그러던데 이 분야에 대해서 개선할 점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 얘기는 들어 보셨어요?

○재정경제부전략수출지원과장 김종현 담당 과장입니다.

수은에서 이 기금을 법안이 통과될 때를 대비해서 실제로 운용을 하는 데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를 컨설팅받는 차원으로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권영세 위원 이걸 분명히 통과될 것을 전제로 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는 좀 다르게 들었는데.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그건 아니지요. 미리 대비용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기재부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수영 위원 표현을 조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진성준 위원 표현을 조금 다듬어야 될 것 같아요.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대규모·장기 등’ 이렇게 분류를……

○소위원장 정태호 취지에는 공감하나 용어 정리는 조금 하자 이런 취지인 거지요?

○진성준 위원 그렇지요.

○소위원장 정태호 그러면 일단 그렇게 하고 잠정의결하고 갈게요.

그다음에 전략수출기금의 설치……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아닙니다. 정의 조항에 대한, 2조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2조예요?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예. 같은 페이지의 하단입니다. 60페이지 하단입니다. 60페이지 하단부터 61페이지까지에 걸친 내용입니다.

○박대출 위원 지금 이 논의가 기금이 필요하냐 논란부터, 의견부터 해야 돼.

○김영진 위원 그게 공청회에서 다 얘기한 것 그러니까 정리가 안 됐는데……

○박대출 위원 공청회에서 얘기한 게 그것인데 그걸 전제로 지금 얘기가, 논의가 진행되면 이것은 지금 앞뒤가 안 맞지 않아요? 이 기금이 필요하냐부터 우리가 심사에서 의

견 개진이 있어야 된다고요.

기존에 수출금융제도가 있는데 이 제도를 별도로 할 필요가 있느냐. 기업들이 부담을 느끼고 있고 이게 또 국가 간의 분쟁 소지도 있고 또 이게 상대국에 대해서는 상대국이 이걸 비용으로 간주를 해 가지고 상대국의 거부감이나 이런 것이 더 있을 수 있고 이런 게 지금 업계 의견이고 산업통상부의 의견이잖아요.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저희가 산업부랑 다 협의했습니다.

○박대출 위원 아니, 있기는 있는데 그 의견이 있고 이 다음……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그래서 그걸 다 협의해서 기본적으로 역외 보조금 이슈는 OECD 수출협약을 저희가 준수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슈는 없고요. 다만 산업부에서 의견을 이야기하는 것은 원전 같은 업종에 직접 부과하면 문제가 된다 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아까 전문위원님이 말씀 주셨지만 수용해서 그것을 빼기로 했습니다.

○박대출 위원 원전에서만 국한해서 한 얘기가 아니라고.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산업부의 의견은 그것과 관련된 이야기라고 저희는 이해했습니다.

○진성준 위원 제가……

○박수영 위원 먼저 말씀하시지요.

○진성준 위원 위원님들마다 개인적인 의견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이 법안에 대한 공청회의 결과 기업의 부담을 우려하는 진술인들도 있었습니다만 이 법안의 필요성과 목적에는 대체로 동의를 다 한 것 같습니다. 특히 대규모 계약의 경우 이런 수출금융지원들이 필요한데 현재 정부의 재정여력이나 민간은행들의 보증여건으로 볼 때는 그것을 다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별도의 기금 필요성이 있다는 데에는 다 동의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기금재원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일선의 수출기업들이 정말로 부담스러운 것은 어느 대목이고 어느 수준까지 해야 그 부담을 덜면서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세부적인 문제인 것 같거든요. 물론 박대출 위원님은 근본적으로 이 법이 필요하냐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공청회 등을 해 본 결과로는 일선 업계에서도 대규모 계약에 대한 수출금융지원이 필요하다고 하는 데에 동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전제로 어떻게 기업의 부담을 낮출 거냐 하는 문제를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설계했으면 좋겠습니다.

○권영세 위원 기업 쪽에서도 좀 나왔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기업에서……

○진성준 위원 방위산업진흥회에서 업계 대표께서……

○권영세 위원 거기하고도 또 다르지.

○소위원장 정태호 위원님들, 오늘 소위를 하게 된 것은 일단 기금의 설치 필요성에는 서로 간사 간의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에 소위가 소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안건이 올라온 거고요. 이 자리에서 필요성부터 논의하기 시작하면 그런 일종의 양당 간의 컨센서스를 부인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아까 진성준 위원님 말씀처럼 진술인들도 필요성에 대해서 다 동의를 한 거거든요.

○박대출 위원 아니요. 그건 다르지 않습니까. 그것은 위원장님, 저 의견이 달라요.

○소위원장 정태호 그런데 이걸 다시 논의하기 시작하면……

○권영세 위원 그런데 우리가 동의했나요?

○박대출 위원 왜냐하면 이 제도 자체가 수출금융을 위한 별도의 어떤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필요하다는 것이지 이 방법적인 것 중에서 가장 핵심이 뭐냐. 준조세를 다시 도입하느냐, 준조세 성격의 기업들에게 기여금 출연을 통해서 하냐, 이 준조세 제도를 우리가 또 다시 도입을 할 거냐 이것은 근본적으로 다른 문제예요. 이게 준조세 성격으로 가 버린다 그러면……

○소위원장 정태호 아니, 그것은 내용을 보면서 얘기해야지 그냥 막연하게 필요하나 안하나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박대출 위원 그게 핵심이기 때문에 여기서 논쟁하는 거지요.

○진성준 위원 결과적으로 기업을 위하는 거잖아요.

○박대출 위원 그렇지요. 기업을 위하는데 준조세 제도라고…… 그래서 제가 아까 공청회에서 표현했지만 속된 말로 뽕 뜯는다는 말이 나올 수도 있는 제도가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의미를 두는 거예요.

○진성준 위원 그래서 그 부담을 어떻게 줄일 거냐 하는 문제를 논의하시자고요.

○김영진 위원 그래서 아까 했던 부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인위적으로 정부 베이스에서 먼저 필요해서 하는 게 아니라 기업에서 실제로 방산이나 대규모 전략수출산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 그런 부분에 대한 필요성에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현재 수은이나 아니면 무보에서 감당할 수 없는 범위까지 와서 어떻게 길을 열 것인가에 대한 기업의 요구로부터 오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어떻게 이 법으로 포괄할 것인가 하는 개념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에 따르는 기업의 여러 가지 기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느 수위로 할 것인가를 논의해 나가면서 조정을 하면 되지요, 기업의 의견도 있으니까. 그런데 이것 만약에 아예 안 해 버리면, 현재 수은이나 무보에 계속 맡겨 버리면 현실적으로 대규모·장기수출전략산업에 관해서는 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게 현장의 요구이지 않습니까? 그런 취지에서 논의를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저는 그건 동의합니다, 그럴 수도 거니까.

○권영세 위원 수은이나 무보를 고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에 대해서 완전히 검토가 끝나서 그건 틀렸다고 이게 컨센서스가 된 건가요?

○박대출 위원 아니지요. 아까 제가 그 문제를 지적했지요.

○박수영 위원 그것은 지난번 소위 때 권영세 위원님께서 수은이나 무보를 고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라고 말씀이 있으셨고 거기에 대한 답변은 아직 정부 측으로부터 받지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수은은 BIS 기준이 있기 때문에 대출 보전을 해 주는 데 한도가 있지만 무보는 은행이 아니기 때문에 BIS 기준을 적용받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무보를 활용하는 방법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은 권영세 위원님이 지난번에 지적하셨고 거기에 대한 답변은 아직 받지 못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권영세 위원 그래서 아까 간사님이 컨센서스가 기금 절차에 대해서 있었다 그래서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싶어서 제가 지적을 한 겁니다.

○박수영 위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대규모·장기사업에 큰돈이 들기 때문에 뭔가 지원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그 방법이 이렇게 기금을 만들어서 하는가, 그것에 대해서는 합의가 된 바가 없고 지난번에 재정법에 보니까 너무 복잡해서 이것은 한번 공청회

를 한 번 하고 봐야 되겠다고 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정부에서 답변해 보세요.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지난번에 수은·무보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여쭙보셨는데요. 저희가 지금 확인한 바에 따르면 수은의 경우에 동일인에 대한 신용여신 한도, 자기자본의 40%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더 털 수 있느냐 했을 때 이미 자기자본의 40%를 한 사람한테 주고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리스크가 너무 커서 부담을 느끼는 상황에서 만약에 이 40을 50으로, 60으로 간다면 한 회사가 자기자본의 절반 이상을 틀어막는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확대하는 것은 리스크 면에서 너무 부담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무보의 경우에도 내부적으로 통제기준으로 지나치게 한곳에 몰아가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현재 제가 알기로는 수은과 무보 사이에는 1 대 1 지원, 이쪽 반, 저쪽 반 이런 식으로 해서 서로 리스크를 나눠 갖자라고 해서 갖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수은과 무보를 통해서 더 이상 활용하기에는 현재로서는 기본적으로 한계가 있고 이것을 총량을 더 늘리려면 계속적인 자본출자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것도 이러려면 0.4씩 늘어나는 그런 구조로 발동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수은과 무보로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박대출 위원 그래요. 그런 어려운 애로가 있으니까 기업들도 내나라. 준조세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그러는 것도 맞지 않은 것 같아요.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반대로 수주권이 나오면 이걸 저희가 감당을 못 하고 있습니다.

○박수영 위원 정부가 예산을 넣을 수 있는 거잖아요.

○소위원장 정태호 차규근 위원님.

○차규근 위원 박대출 위원님 말씀하신 준조세적인 성격의 기금을 만드는 그 우려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또 기대되는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것을 갖다가 비교형량을 해서 어느 게 지금 우리 방산업계에 더 필요한 것인지 그걸 조금 따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오전에 공청회 때도 네 번째 패널이 방산업계 관계자를 대표해서 오지 않았습니까? 그분도 이런 기본적인 법안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신 걸로 저는 아까 이해를 했거든요. 그 전체하에서 한번 그러면 준조세적 성격의 기금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설정…… 아까 율촌의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컨센서스를 모아 나가는 것이 전체적으로는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박대출 위원 그 취지는 ‘방산 분야는 해도 좋다, 다른 분야는 안 된다’였어요, 그분 취지는. 지금 방산만 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방산이 주된 부분입니다만 전체적으로……

○박대출 위원 지금 플랜트, 해양, 조선 다 하자는 거잖아요.

○소위원장 정태호 진성준 위원님.

○진성준 위원 기업에 기여금을 부담시키면 당장 기업으로서는 부담스러울 수 있겠는데 또 한편으로는 그냥 무작정 돈 벌었으니까 내나라가 아니라 당신들이 그런 계약을 통해서 이익을 취할 수 있게끔 국가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충분하게 지원하지 않았는가. 수

출 담보라든지 지금 보증이라든지 또 그밖의 절충교역상의 기술 이전이라든지 국가가 그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기업을 위해서 국가가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총동원해서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런 수혜에 대해서도 기업들이 기여할 수 있고 그런 기여가 결국 제 살 깎아 먹기가 아니라 더 큰 이익을 얻기 위한 투자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만 이것이 업종을 넘나들면서 할 경우에는 기여한 데서 엉뚱한 산업 분야로 지원될 수가 있는 것이니까 이걸 칸막이를 좀 쳐서 업종별로 기여금에 해당하는 자체 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하는 공감대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너무 기업의 부담만을 강조하실 것은 아니고 그에 따른 혜택도 있는 거고 또 그 이전에 국가적인 기여와 혜택에 대한 보은이라는 측면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울러서 함께 고려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업의 부담을 좀 줄여 가면서 어떻게 더 큰 이익을 실현할 수 있을까 하는 구체적인 논의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박수영 위원님.

○박수영 위원 아까 공청회 과정에서 그 문제가 많이 제기가 됐지요. 그런데 방산기업을 대상으로 하자면서 다른 것까지 지금 다 들어있는 거고, 해양·플랜트·원전 다 들어있는 것이라서 칸막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도 지금 쉽지 않은 문제이고 방산기업으로 가면 아까 차관님하고 제가 논쟁을 벌였던 것처럼 영업이익률이 3%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걸 거기서 영업이익을 대상으로 1~5%를 받겠다는 것이 아니라 계약금액을 대상으로 하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지금 법 조문이?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저희가 그러니까 모수는 지원액의……

○박수영 위원 수출 지원액이에요. 그게 계약금액이라는 건데 그걸로 하면 영업이익보다 훨씬 더 커질 우려가 있다. 그리고 거의 수익이 안 나고, 쪽 안 나고 적자를 보다가 겨우 수익을 좀 보고 있는데 이걸 빨리 R&D로 투자를 해야 되는데 또 거기서 폐오게 되고 만약에 러우전쟁이 끝나고 방산업이 또 가라앉게 되면 그건 또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까지 아까 공청회에서 제기가 됐지 않습니까?

아마 차관님이 공청회에 안 들어오셔서 가지고 얼마나 열띤 디베이트를 했는지를 잘 모르고 하시는 말씀인 것 같은데, 근본적으로 진성준 위원님 말씀처럼 기업의 부담을 확 덜어줄 수 있다면, 예를 들면 정부가 기금을 낸다든지 하면 얼마든지 이런 대규모 장기사업이 필요하니까, 필요하지만 지금 단계에서 기업에 부담금을 매기는 게 맞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의구심이 있고 확신이 없다, 그래서 기업에 부담금을 부여하는 준조세 방식은 안 되겠다는 것이 저희 당 위원들의 일반적인 의견이었습니다.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위원님, 그중의 하나, 말씀 중에 1~5%라는 표현이 약간 혼동이 된 느낌인데요. 예를 들면 저희가 말하는 구매자금융은 법상 최대 1%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0.5에서 추가적인 이슈가 있을 때 가중하는 것이기 때문에 0.5 정도를 평균으로 보셔야 되고요. 5는 구매자금융과 관계없고 절충교역에 관련된 이야기고요. 아까 전에 공청회 중에 절충교역에 대해서 베이스가 모호하다고 했는데 저희가 따로 만나서 그분하고 이야기해서, 이미 법상으로 절충교역 금액이 계약서에 나오거든요. 그것을 바탕으로 5%다 했더니 그러면 이해가 된다고 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박수영 위원 그 말씀 잘하셨는데, 절충교역을 하게 되면 규모가 엄청나게 늘어납니

다. R&D 지원이라든지 교육훈련이라든지 수리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하는 거거든요. 직원들 교육까지 포함하는 거라서 절충교역 하면 그 계약금의 규모 자체가 엄청나게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5% 한도를 때린다? 이걸 정말 더 위험한 일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0.5% 할 거라면서 법안은 뭐 하러 그러면 1% 한도로 합니까?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왜냐하면 위험도를 가중해서 감안하라고 그랬기 때문에 0.5에서 만약에 좀 더 긴 장거나 좀 더 신용이 낮으면 그래도 시장원리를 가동하기 위해서 부가율을 올리기 위해서 저희가 만든 겁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권영세 위원님.

○권영세 위원 아까 공청회 중에서, 제가 다 있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이런 식의 부과율을 부과하는 사례가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던 말이에요. 방산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똑같은 조건에 처해 있을 것 아니겠어요, 다른 나라들도? 다른 나라들이 없는 이유는 알고 있나요?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다른 나라는 저희들처럼, 제가 정확하게 확인을 해 봐야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어떤 경우에는 국가의 공기업이 방산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두 번째는 아마 수출금융을 이렇게 대규모로 해 주기가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이슈보다는 자기가 파이낸싱 하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것은 정확하지 않아서 여쭙본 것은 다시 한번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권영세 위원 그런 식으로 부과하는 것이 좀 드문 것 같고. 그다음에 아까 방산업체하고 진흥회 말고 기업하고 또 다룰 수가 있으니까 업체들 혹은 플랜트 업체들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수요조사라든지 논의를 좀 해 봤습니까?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아까 전에 절충교역 관련해서 선행 연구가 있었었는데요, 그때 방산업체 의견을 조사한 결과 절충교역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다면 얼마가 좋으냐 했을 때 한 3% 정도면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추가적인 것까지 감안하면 한 6%도 나왔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선행 연구결과에 따라 한 3~5% 정도가 의견이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영세 위원 방산업체하고 직접 얘기를 해 본 거예요?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방산업체 의견 조사는 3% 정도였다고 나왔습니다.

○박대출 위원 내가 구체적인 문제를……

○소위원장 정태호 잠깐만요.

○박대출 위원 구체적인 수치를, 제가 그 논쟁은 안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소위원장 정태호 박대출 위원님, 발언 총량이 있습니다.

최은석 위원님도 발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지요.

○최은석 위원 뒤의 기여금 문제까지 같이 포괄해서 이렇게 말씀들 나누다 보니까, 아까 차관님이 말씀하신 0.5%를 지금 계획하고 있다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일단은 지금 시행령에서 생각하시는 거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구매자금용 같은 경우에는 실은 보면 매출액하고도 직접적으로 연동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매출액의 1%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매출액의 1%까지 기여금을 부담시킬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프로젝트에 따라서?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저희 지원액……

○최은석 위원 기업의 매출액의 1%라고 하는 것들은 생각보다 엄청난 부담금입니다, 기여금이라고 하는 게. 그런데 그게 영업이익으로 따지면 영업이익률이 되게 높은 해 아니면 높은 어떤 특정한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 안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조금 전에 박수영 간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지난 과거에 평균적인 영업이익률이라고 하는 것들을 놓고 보면, 이렇게 지금 현재 예를 들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아주, 수익률이 되게 좋을 수도 있는데, 옛날에 그 회사 이름 뭔지 아시지요? 삼성테크윈이라고 아주 부실 회사였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방산업체 자체가 그동안 되게 열악한 사업 환경에서 사업을 하던 데고 이런 데가 지금 잠깐 이렇게 글로벌 무기 산업 때문에 일단 호황을 맞고 있는데 여기에 구매자금융의 1%까지 그렇게 부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은 따지고 보면 매출액의 1%라고 하는 게 엄청나게 큰 거고 영업이익률이 통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한 3% 정도 이렇게 아까 저도 그런 사례를 봤는데 그 정도 되면 영업이익률로 보면 거의 3분의 1이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실제로 기업한테 미칠 실질적인 부담이 생각보다 되게 과중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제가 지금 드린 말씀에 혹시 무슨 애러가 있습니까? 아니지요? 구매자금융의 1%까지 지금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그거는 최대이고요.

○최은석 위원 그러니까요. 자꾸 최대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그다음의 시행령의 문제고 지금 법안 상정된 데에는 1%까지 이렇게 부과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거니까 일단은 기업들이 예측할 때는 1%로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상정하고 앞으로 이 법이 시행되면 우리한테 얼마나 많은 기여금이 납부될 수 있는가 이렇게 판단하려고 하겠지요, 기업들은.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하나 말씀드리면, 말씀하신 그 숫자는 회사 전체의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저희가 지원한 것에 하기 때문에 전체를 0.4를 덜어뜨린 게 아닙니다. 저희 지원액에 대해서만 그렇게 하니까 전체로 흡수가 돼서……

○최은석 위원 그런데 어떤 프로젝트를 보면 예를 들어서 지원금액이 아까 KAI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지원, 구매자금융으로 이렇게 매출이 일어난 사례가 있더라고요, 아까 거기 답변하실 때 보니까.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예, 있습니다.

○최은석 위원 그런 경우에는 전체 매출액의 1%입니다, 그냥. 그런데 KAI 같은 경우에 작년에 보면 세전이익률이 한 5% 돼요. 그럴 경우에는 매출액의 1%가 만약에 부담금으로 가게 되면 전체 당기순이익이 20% 정도가 영향을 받거든요.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저희가 KAI 자료를 갖고 있는데요. 매출액이 한 3조 6000 되는데 저희가 지원한 건 1조 300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최은석 위원 과거에 폴란드인가 어디 사례를 가지고 아까 방위산업협회에서 우리한테 얘기를 해 주신 게 있어요.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그런데 그 경우에는 아마 영업이익이 굉장히 높게 나올 겁니다. 낮게 나올 가능성이 없습니다.

○최은석 위원 어쨌든 그게 매출액의……

○소위원장 정태호 잠깐만요.

담당 국장님이 한번 설명해 보세요.

○재정경제부혁신성장실장 민경설 재경부 혁신성장실장 민경설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계속 말씀해 주셨던 거와 관련해서 매출액 대비해서 계속 말씀해 주시고 계시고 사업 단위로 해서는 결국 대부분이 수출금융을 통해서 하는 거 아니냐 그 말씀과 관련해서는 수출신용협약에 따라서 많이 해도 80%, 85%뿐이 못 하고 있고요. 폴란드와 관련해서도 1차에서는 80% 했는데 2차와 관련해서는 50% 이하로 지금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생각보다 많이 낮다라는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고요.

그거와 관련해서 아까 여기에서도 1% 상한이라는 것은 수출금융으로 지원했던 금액의 한도가 1%라고 하는 거고 실질적으로 0.5%라는 거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계산을 해 보니까 영업이익을 실질적으로 줄이는 효과도 굉장히 낮은 비율이다라는 게 저희 내부적으로는 계산을 좀 해 봤다는 겁니다.

○박수영 위원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자료 가지고 설명도 하고 해야지 지금 자료 있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

○진성준 위원 글썄, 결국에 기업 부담을 어떻게 줄여줄 거냐 하는 데 논의가 모여진 것 같으니……

○소위원장 정태호 잠깐만요.

○진성준 위원 저는 전체적으로 조문에 대한 정부의 의견을 들었고……

○소위원장 정태호 잠깐만요. 조인철 위원님 발언권이 있습니다.

조인철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조인철 위원 조인철입니다.

처음 발언합니다. 처음 소위에 들어왔고 재경위에 처음 와서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논의가 워낙 왔다 갔다 거러 가지고 정신이 없습니다, 공부도 될 뻔 있는데. 그런데 오늘 아침에 제가 공청회 한 것 그다음에 위원님들 발언하시고 하는 것 보면 이 특별법 제정 자체에 대해서 이걸 절대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 다 동의하고 지원 방식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아니면 지원 정도를 어느 정도 가져가야 될 것이냐라는 것에 대한 논의 같습니다.

그래서 논의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하나하나 조문 따져 가면서 보시고 뒤에 가서 지원 방식이 이게 아니다 그러면 다른 대안을 제시해서 빨리빨리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 이 법안을 가져오고 두 의원님이 제출하신 걸 보면 이게 한가해서 한 거는 아니고 굉장히 입법이 필요하고 시급히 지원돼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에서 서둘러서 낸 거기 때문에 논의를 빨리 좀 해 줬으면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무보로 가능할 것이냐라는 부분도 보면 무보에서 지금 지원하는 게, 무보 수입이 정부 출연금이 대부분인가요?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정부의 출연금으로 바탕을 해야지만 지원 가능합니다.

○조인철 위원 그런 거지요. 그리고 거기에는 일반 대부분의 수출 기업들이 다 포함이 될 거고.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예, 그렇습니다.

○조인철 위원 특별하게 지금 여기 전략수출 기업이라고 하는 부분을 별도로 뽑아서 지원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일반론적인 일반 기업에 대한 지원하고는 다른 특수한 어떤 사정이 있기 때문에 별도의 법안을 마련해서 별도의 장치를 마련하자라는 게 이 법의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지요?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예, 맞습니다.

○조인철 위원 그러니까 일반 무보에서 가지고 있는 무보 기금으로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정도나 이런 부분들은 뒤에 가서 차근 차근 논의를 하시고 지금은 한 조항 조항 따져 가서 말씀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야당 위원님들도 보시면 이 법 자체를 절대 안 된다라는 말씀은 아니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동의하신다면 한 조항 한 조항 진도를 좀 나갔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박수영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박수영 위원 이 법 자체가 안 된다 이렇게 말한 사람 없다고 하시는데 공청회 때 나온 얘기를 들어 보면 전 취지를 봐야 됩니다. 대놓고 그 문장으로 ‘이 법 안 된다’ 이렇게 말은 하지 않았지만 저 역시도 정말 갈 길이 멀다, 이대로는 어렵겠다, 재경부가 너무 무성의하게 법 초안을 만들어낸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드렸고 아마 공청회 속기록이 있으면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오늘 공청회에서 너무 많은 문제가 제기됐다고 보고 있는데 여당 위원님들은 별 큰 문제는 없었고 부담금 정도의 문제만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계신데 동일한 공청회를 두고 인식의 갭이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제가 진행을 위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그러니까 이 필요성에 대해서는 지난번 회의 때 대체적으로 저는 컨센서스가 있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왜 그러냐면 현실적으로 지금 대규모 장기적인 투자 수출이 필요한 부분에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인가 그게 정부의 가장 큰 고민이었던 거, 그런 부분에서 동의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내용을 가지고 좀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조항마다 심의를 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었고, 또 그런 취지로 오늘 이 회의가 소집이 됐고 그 전에 좀 더 심의를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아침에 공청회를 하고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면 조문 심의 때 반영할 것인가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 회의에서 이 법이 필요하냐부터 이렇게 따지기 시작하니 참 소위원장으로서는 난감합니다.

그런데 결국 지금 이런 거였습니다. 이게 필요하냐 안 하냐 그 부분에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금 우리가 목적에 대해서 논의를 하다가 말았는데 조문 조문 들어가면 아까 기업의 부담, 기여금 문제 이런 것들이 쟁점들이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논의를 해 보면 제 생각에는 이 필요성 문제도 좀 자연스럽게 해결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회의를 열었으니까 조문별로 좀 논의를 진행을 하고 그리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이 법의 필요성에 관한 부분은, 어차피 지금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 위원님들은 이 필요성 조차도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있으니 그거는 간사 간에 논의가 될

요한 영역이 아닌가 싶어요. 일단은 조문별로 심의는 좀 진행을 하는 걸로 하지요.

○박대출 위원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간사 협의를 좀 먼저 해 주시면 좋겠고요. 전략 수출금융지원이라는 그 필요성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과 같이 컨센서스를 이뤘다는 문제와 전략수출금융지원을 근본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아주 전혀 다른 문제 차원입니다.

그래서 방법적인 문제가 처음 출발부터가 준조세를 통해서 해결한다는 문제라면 준조세라는 것은 여러 가지 순기능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양해야 될 장치라는 것, 그것 때문에 만일 기업들의 기여금을 출연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쓴다면 이것도 우리가 또 처음 출발부터 신중하게 지금 이 법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그것도 기업들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하면 감내할 수준이 어디인가 그렇게 들어가야 되는 것이지 바로 기업들이 감내할 수준이 뭔가라고 지금 바로 묻고 들어간다는 것은 기업들이 감내를 하겠다라는 전제를 까는 건데 그 전제부터 저는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준조세는 대단히 조심하게 우리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문제다라는 거고, 지금 방법 측면에서 몇 가지 나오면서 여기서 이게 지금 대단히 너무 성급하게 가고 있구나라고 느꼈던 게 영업이익익률이라든지 수익률이라든지 그런 걸 정부가 설명하는데 저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요. 영업이익익률이 20% 넘는다는 기업은 대한민국의 100대 기업 중에서 몇 개나 될까요? 이십몇 프로 넘는 게? 요새 72% 기업도 나오기는 하더라마는 20%라는 게 그렇게 나올 수 있는 수치가 아니에요.

○소위원장 정태호 차관님, 이게 지금 채원 자체가 정부출연금인 1번 아니에요? 지금 기여금이라는 거는 지원해 준 거에 대해서 소위 말해서 수익자 부담으로 일부를 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로 마치 기금이 운영되는 것처럼…… 그건 아니잖아요?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예, 그건 아닙니다.

우리 실장 이야기를 조금 더 들어 보시면……

○소위원장 정태호 실장 한번 설명해 보세요.

○재정경제부혁신성장실장 민경설 지금 말씀해 주신 것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기여금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계산을 조금 해 보니까 1년에 많으면 한 400억에서 조금 더 해서 500억 아니면 조금 더 하더라도 오육백억 수준의 수입이 생길 것 같다는 게 저희들이 계산 금액인 거고요. 다만 이걸 통해서 얼마큼의 총 금융 공급을 하겠냐 하는 정도를 저희들이 생각을 하면 그 상황 상황별로 조금 다르기는 하겠지만 한 4조 원 정도, 총 4조 원 정도를 정부의 출연이라든지 아니면 자체적인 채권 발행이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하고 그중에 아까 말씀드렸던 부담금을 통해서 얻는 수입은 아주 작은 부분이다.

○박대출 위원 아니, 정부가 4조 내고 기업은 400억 내고?

○재정경제부혁신성장실장 민경설 아니, 정부가 4조 내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정부가 1000억 원 정도를 하더라도 그거에 보증 배수가 10배, 많으면 20배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정부가 1000억 원을 내더라도 그렇게 하게 되는 거고요.

○박수영 위원 실장님, 그런 상황이 있었으면 미리 와서 좀 보고를 했으면 좋았을 건데…… 숫자 같은 거 가져와서 출연금은 얼마 내고 정부가 기업으로부터 얼마나 기여금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총 얼마 정도로 구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재경부는 기금을 얼마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 건지 왜 설명 좀 하고 자료도 주고 하지 지금 와서 처음

듣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조인철 위원 설명을 안 하셨습니까?

○재정경제부혁신성장실장 민경설 박 위원님한테는 저번에 또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박수영 위원 아니, 법안에 대한 개요만 설명했지 그런 숫자를 나한테 와서 설명한 적이 없잖아요? 숫자 자료 좀 줘 보세요, 우선.

○진성준 위원 이 자리에서 브리핑을 해 보세요, 그러면 구두로라도. 기업 부담이 너무 커질 것 같아서 우려들 하시는데 기업 부담이 그렇게 크지 않구먼. 한 400억, 500억……

○박수영 위원 얼마를 조성할 거예요?

○재정경제부혁신성장실장 민경설 조성한다는 말씀이 한 해에……

○박수영 위원 기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금 얼마를 조성할 거예요, 그러면?

○재정경제부혁신성장실장 민경설 기금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러니까 주요하게 지원해 주는 것은 그러니까 해당 여기 수출입은행을 통해서 이 기금에서 채권 발행을 통해 가지고 하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정부가 한 1000억 원 정도를 내게 되면 한 10배, 많으면 20배 정도를 해 가지고……

○박수영 위원 총 기금이 얼마예요? 기금 얼마 있잖아, 우리가 무슨 기금 하면 총 얼마 있잖아요. 보증 배상 얼마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진성준 위원 목표액이 얼마예요?

○재정경제부혁신성장실장 민경설 한 해에 4조 정도를 보통 지원해 주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수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총 기금이 얼마냐고.

○박대출 위원 1400억 모아 가지고 4조 지원하겠단?

○재정경제부혁신성장실장 민경설 아니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1000억 정도를……

○소위원장 정태호 아니, 잠깐만요.

우리가 총액 4조 원을 지원한다 그러면 정부 출연금이 어느 정도 되고, 채권 발행이 어느 정도 되고…… 그러니까 지금 전략수출기금의 재원이라는 게 조항이 있잖아요. 1번이 정부 출연금이고 그다음에 2번이 채권 발행 이렇게 돼 있고 3번이 기여금 등등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조성하는지 재원은 법률에 나와 있는 거고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거는 예를 들면 한 4조 정도를 하겠다 그러면 그중에서 정부 출연을 얼마를 하고 채권을 얼마 그걸 좀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해 달라는 거예요.

○재정경제부혁신성장실장 민경설 4조 정도에 대해서 조성이 그중에서 한 2조 정도는 채권 발행을 통해서 조성을 하겠다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1000억 정도를 정부가 출연을 하게 되면 보증금에서 한 10배 정도거나 그 정도…… 10배, 많으면 20배 정도 되고 그거까지 합치면 3조, 많으면 4조가 되는 거고요. 나머지에 대해서는 기여금을 받아서 하는 게 400억에서 많으면 500억, 오륙백 억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그때 기여금이라는 거는 일종의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지원을 해줬으니까 너네들이 좀 기여 좀 해라 그런 취지잖아요. 이거를 마치 무슨 세금을 뜯어 가지고 이 재원을 조성할 것처럼 지금 박대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전혀 아니잖아요.

○재정경제부혁신성장실장 민경설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최은석 위원 잠깐만요. 아까 방위산업협회에서 와서 이렇게 KAI 사례를 들었을 때 어떤 수출 사례를 놓고 보면 기억이 안 나는데 400억에서 한 2000억 정도도 낼 수 있다 이렇게 분석됐었거든요, 지금 이 법안대로 기여금을 산정하게 되면.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연간 400억에서 몇 백억 정도라고 하는 거 하고는 갭이 너무 큰 것 같은데요.

서로가 그러면 이 법의 해석에 따라서 방위산업협회는 또 다르게 어쨌든 최대한 부과될 수 있는 금액에 대해서 아마 산정을 해서 우리한테 KAI 사례를 얘기하신 것 같고 지금은 전혀 그렇게 안 될 거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지금 갭이 되게 큰 것 같아요.

○조인철 위원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2500억까지도 이야기하셨는데……

○최은석 위원 그렇지요.

○조인철 위원 그 기준은 그거는 매출액 얼마짜리 계약을 했냐, 4조 계약을 했으니깐 한 방에 때린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연간으로 죽 하기 때문에 10년……

○최은석 위원 그런데 그게 한 회사가 그런데 실질적으로 있었던 사례고, 그렇지요? 실질적으로 있었던 사례인데……

○조인철 위원 그거를 아까 400억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연간 400억이고……

○소위원장 정태호 잠깐만요. 순서대로 하세요, 순서대로.

○최은석 위원 그래서 그거는 일단 KAI 사례인데 실질적으로 이 법이 적용되면 KAI 같은 경우에는 어떤 하나의 프로젝트에서 이천 몇백 억 정도를 이렇게 납부할 수도 있다고 그렇게 아까 분석이 됐었거든요, 그게 몇 년인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지금 KAI 말고도 예를 들어서 다른 에어로스페이스도 있고 여러 회사들이 많을 텐데 그런 회사들이 실제로 그렇게 좋은 프로젝트들을 많이 만약에 수주하게 되면 지금 예상하고 있는 것보다는 훨씬 더 민간기업의 부담이 커지는 거지요.

○소위원장 정태호 아니, 이렇게 보셔야 돼요. 뭐냐 하면 정부가 1000억을 출연을 하고 그 돈을 가지고 채권 발행을 한단다는 거잖아요. 10배, 20배 보증 채권을 발행한다는 거잖아요?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보증을 한다는 뜻입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그러니까 보증을 해서…… 국가 보증채가 되네요. 그렇게 해 가지고 재원이 그걸 중심으로 재원이 만들어지는 거고 그중에 아주 일부가 기여금 들어오는 걸로 되는 거고 그때의 그 기여금은 이것이 이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기여금이 아니라 ‘정부가 너 수출하는 데 돈 대줬으니까 그러면 너도 좀 기여해라’ 그런 취지로 내는 건데 지금 위원님들 지적은 그 기여금이 오히려 회사, 수출 기업한테 부담이 되는 수준으로 가서는 안 된다 그걸 지적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기여금이 마치 전략수출기금의 전체인 것처럼 이렇게 해석하는 거는 이 제도 자체를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 기여금에 대한 부분은 재원에 관한 문제를 논의할 게 아니고 기업에 대한 부담을 어떻게 줄여줄 것인가 그런 관점에서 저는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조문별로 좀 들어가 봐야 이게 어떤 구조를 가지는지를 우리가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다는 생각에서…… 지금 계속 한 발짝 진행도 못하고 논의를 하고 있거든요.

○최은석 위원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면 그런데 이 법안의 제안 배경을 보면요. 지금 이렇게 정부가 많이 도와주는데 정부가 위험이나 비용을 정부가 오롯이 부담하는데 민간

기업들이 무임승차하는 게 문제가 있다라는 그 문제의식도 이 법안을 이번에 발의하시는데 큰 이유가 됐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그런데 지금 구체적인 운영안을 준비하시는 실무는 보면 민간기업의 부담은 얼마 안 된다, 전체 기여금 중에서도 규모가 되게 작다 이렇게 하는 거하고 처음에 이 법안을 발의하실 때 지금까지 정부가 했던 또 공공기관이 했던 이런 데 어떤 위험이나 손실에 비해서 민간 방산업체들은 그냥 무임승차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하고도 또 매치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부터 전체적으로 이 법안의 필요성이나 이런 것들이 진짜 맞느냐 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조금 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조인철 위원님.

○조인철 위원 끼어들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 부분에 그러니까 계약 금액 총액을 가지고 거기다가 1%, 5%를 곱해 가지고 나온 총액 그로스(gross) 개념이고 연간으로 죽 하면 계약이 한 10년, 20년 거래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보면 400억까지 떨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지금 효율이나 부담이 될 거냐 말 것이냐 이런 부분들도 계속 따질 때 보면 그러니까 1~2%, 4% 이 정도만 이야기를 계속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아마 정부에서 직접 나서서 자금을 조달하거나 할 때도 민간기업에서 직접 조달해서 하는 것보다는 이자율 자체도 훨씬 더 낮을 겁니다, 보증해 주는 것 자체라도. 거기에서 벌써 혜택을 먹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수출금융지원을 받게 되는 업체 입장에서 보면 그 정도는 어느 정도 기여금으로 내고 산업 생태계를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시드머니로 쓰자 그렇다고 보면 자기들도 전체적으로 산업 생태계가 커지면 같이 커지는 거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보면 법안의 제정 필요성은 좀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야당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러니까 그 방법, 기금을 얼마로 할 것인지, 기금으로 할 것인지 그 부분은 뒤의 단위에서 방법이나 수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니까 앞의 부분부터 차근차근 가고 뒤에 그 부분이 나오면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그렇게 해서 진도를 좀 나갔으면 합니다. 지금 맴돌고 있어서, 1시간 반이 됐는데……

○소위원장 정태호 제 생각에는요 아까 수출금융기금 또는 수출입은행이나 무보나 이쪽을 활용하는 게 어렵다면 그러면 다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시면 현실적으로 이게 달리 선택의 여지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아까 무보나 수출입은행을 통한 방법은 어렵다라는 거에 동의하시는지 한번 여쭙보고 싶은데. 거기에 동의하시면 이 길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다른 방법이 없다면.

○박수영 위원 차관님, 작년에—차관님 아마 오시기 전인가요—우리가 수출입은행 폴란드 방산 때문에 자본금을 올려 줬지 않습니까, 수은을? 그때는 그 방법이 최고다, 이거 보증을 우리가, 정부가 서 줘야 되는데 자금이 모자라니까 수출입은행의 자본금을 10억인가 15억인가 올렸잖아요?

○재정경제부혁신성장실장 민경설 15조에서 25조로 올렸습니다.

○박수영 위원 15조?

○재정경제부혁신성장실장 민경설 15조에서 25조로 올렸습니다.

○박수영 위원 10조를 더 올렸네요. 그렇지요?

○재정경제부혁신성장실장 민경설 예, 법정자본금입니다.

○박수영 위원 그러니까 법정자본금을.

그래서 우리가 한 거거든요, 그때. 급하다고 그래 가지고 폴란드 빨리해 줘야지 이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이런 얘기가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그 방법을 하니까 한계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수주가 계속 저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걸로도 감당이 안 돼서 지금 이 방법까지 동원한 겁니다.

○박수영 위원 그러면 이거는 BIS 때문에 아까 안 된다고 했잖아요?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수은은요.

○박수영 위원 수은은?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예.

○박수영 위원 무보는 BIS가 없잖아요?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무보는 그건 없지만 내부 통제 기준에 따라서, 예전에 RG 사고 이후에 내부 통제 기준이 강화돼서 함부로 많이 안 하려고 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수은하고 같은 금액을 하려고 합니다.

○박수영 위원 그러니까 내부 통제 기준이라는 거는 법률보다 훨씬 하위에 있는 거지 않습니까?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그래서 수은 한 것보다 더 안 하려고 합니다.

○박수영 위원 그건 산업부 거라서 재경부에서 손을 못 대고 그런 건 아닌가요?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그건 아닙니다.

○박수영 위원 무보는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제도적인·법률적인 제한은 없는 거 아닙니까, BIS 같은?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그래도 내부 기준에 따라서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니까 한 곳에 많이는 못 주는 거고 그 한도를 수은만큼만 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수은이 안 나가면 무보도 같이 안 나갑니다.

○박수영 위원 그러니까 BIS 기준의 한도가 있는 수은을 무보는 또 따라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냥 안전빵으로 하겠다는 거지.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위험을 분산하겠다는 취지로……

○소위원장 정태호 진성준 위원님.

○진성준 위원 자료를 보다 보니까 알게 됐는데요. 88페이지 한번 다 같이 봐 주시겠어요?

‘최근 10년간 수출금융 및 구매자금융 공급 실적’이라고 나와 있네요. 최근 3년 동안에 많이 늘어나 가지고 이게 전부는 아니지만 거기 각주에 달려 있는 것처럼 작년에 한 20조 규모였어요. 이 구매자금융 20조를 전부 다 이룰테면 기여금 부과 대상이라고 해도 1%면 2000억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다 기여금 대상은 아니라는 거잖아요?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예, 사전에 미리 약정이 돼야 됩니다.

○진성준 위원 그렇잖아요?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이것 아니면 계약을 못 판다는 게 있어야 됩니다.

○진성준 위원 그리고 2022년까지는 해마다 10조가 채 안 돼요. 그러니까 최근에 수주 규모가 커지고 계약 규모가 커지면서 그러는 건데 그런 만큼 기업들도 수익자 부담 원칙

에서 기여금을 내자 이런 얘기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크지 않다. 크지 않다는 거를 저는 여기서 보여 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 구체적인 논의로 들어가면서 기업의 부담이 정말로 많은 것이라면 그걸 어떻게 손질할 것이냐 이렇게 논의했으면 좋겠어요.

○박수영 위원 그러니까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예측한 통계표가 있다면서요, 숫자가 있더라. 데이터셋을 좀 줘 보세요. 주고 얘기를 합시다. 왜 한 번도 자료는 안 주고 말로만 자꾸 얘기해요?

○재정경제부혁신성장실장 민경설 드려도 되겠습니까?

○소위원장 정태호 그러면 그 자료 주세요.

화장실 좀 갔다 오세요. 정회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회의중지)

(16시06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정태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대출 위원 위원장님, 잠깐 제가……

○소위원장 정태호 예.

○박대출 위원 제가 아까 잠깐 이석하면서……

여기 담당 국장 자리 비웠네요.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자료 때문에 아마……

○박대출 위원 자료 받으려요?

아까 제가 차관한테 확인한 부분인데 지금 정부가 구상하는 기금운용계획이 재원 조달부터 시작하면 정부가 1000억 정도를 출연하고 기업이 400억 정도를 출연하면 채권 2조, 보증 2조 정도 해서 4조를 운용할 수 있다.

다시 반복할게요.

아까 설명하실 때 지금 정부가 출연금을 한 1000억 정도 예산을 하고 기업이 한 400억 정도를 예상하면 그 1400억 정도 조성된 걸로 채권 2조 그다음에 보증 2조 원 정도로 해서 총 4조 원 정도를 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라는 게 정부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렇다면 저는 제안을 이렇게 드릴게요. 기업들로부터 400억을 준조세 성격으로 받아서 이 제도를 운영하면 여러 가지 난제들도…… 제가 공청회나 거기서도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국제분쟁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계약 당사국에도, 그 비용의 원가 요인으로 이걸 그쪽에서 받아들여 가지고 또 계약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애로가 있으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그 정도 규모로 만일에 구상을 한다면 그냥 그 기업이 부담해야 되는 400억 정도의 부담까지도 정부가 다 해서 해결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게 제 제안이고요.

그렇게 한번 검토해 보시고 정부가 그게 수용 가능하다고 그러면 또 정부 의견을 주시고. 지금 바로 답변 안 해 주셔도 돼요. 그걸 검토해 보시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래

갖고 이렇게 매듭을 냈으면 좋겠어요.

○박수영 위원 저도 자료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예.

○박수영 위원 차관님, 아까 자료를 제가 확인을 하겠는데요. 아까 수은하고 무보, 무보는 BIS 기준이 없기 때문에 더 지원이 가능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수은하고 똑같이 맞춰서 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리스크를 분산하자는 취지입니다.

○박수영 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 속기록을 보면 무보는 수은하고 같은 금액을 한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폴란드 방산 자료를 내가 쉬는 시간에 찾아보니까 23년에 폴란드 1차 때 수은이 50억 불을 했어요. 그때 무보가 다시 50억 불을 똑같이 매치시킨 건 맞습니다. 그런데 2025년도 폴란드 2차 방산 때 수출 지원을 했는데 수은은 BIS에 걸려 가지고 13억 불밖에 못 하고 무보는 그해 39억 불을 해요.

그러니까 차관님 말씀하신 게 안 맞는 거야. 아까 차관님은 분명히 무보가 수은하고 맞추기 때문에 무보에 무작정 더 없어 봐야 일이 안 된다 그렇게 답변하셨잖아. 그러니까 왜 차관님이 이렇게 맞지 않는 숫자로 답변을 하십니까?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아마 그건 기본적으로 일대일로 같이 가려고 하는 건데 만약에 2차 때 수은이 도저히 BIS 비율이 안 되니까 이 건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한 거지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는 거고요.

그리고 이걸 원칙적으로 해서 이런 걸 통해서 무보로 다 해결할 수 있다 그렇게는 아닙니다. 그 건은 굉장히 특이한 경우여서 어쩔 수 없이 했다고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많이 익스포저가 한쪽에 몰아지면 이 건이 만약에 잘못됐을 때는 무보의 기본자산이 급격하게 줄기 때문에 그 리스크도 분명히 있는 것은 맞습니다.

○박수영 위원 맞지요. 폴란드에만 익스포저 되면 안 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익스포저를 낮추려면 다른 사업을 또 하면 되잖아. 익스포저는 한쪽으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다른 걸 다 떠나서 차관님이 이 소위에 나와서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하시면 안 된다, 그 점에 대해서 매우 유감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실장님.

○재정경제부혁신성장실장 민경설 조금 아까 이형일 차관께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폴란드에 대해서 1차와 2차 할 때 제가 수은을 담당했던 국장이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굉장히 의미가 있었습니다. 원래 무보라는 데는 기본적으로 자기네들도 분명히 익스포저라는 게 있고 국회로부터 한도를 받기 때문에 최대한 한쪽으로 몰아가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위기의식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서 수은에서는 BIS 비율, 동일인 신용한도로 하기 때문에 최대한 맞춰서 가는 수준으로만 하고 있는 거고 폴란드 1차 할 때는 그래도 총 100억 불 중에서 50억 불, 말씀하셨던 대로 2개 똑같이 나눠서 했고 대부분의 사례에 있어서 똑같이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2차에 있어서는 그 당시에 수은이 40%에 딱 목에 걸리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그러면 어떻게 하냐고 하는 굉장히 큰 문제의식이 있었던 건데 그 당시에 어쩔 수 없었던 부분을 일단 무보에서 조금 더 해결을 하면서 결론을 내릴 수 있겠다고 하는 정 말 불가피했던 것이고……

○박수영 위원 그러니까 실장님이 당시에 국장을 하셔서 이게 딱 맞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차관님이 잘못 말씀하시면 빨리 보고를 드려서 수정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잖아요, 마치 맞는 것처럼. 소위에 나와서 그렇게 가짜 숫자를 들어 대고, 알고 있으면서 정정 안 하면 더 나쁘지. 차관님은 자기 업무가 아니잖아요, 지금. 2차관이 오셔야 되는데 2차관 해외출장 때문에 1차관이 오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실장이 잘 보좌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재정경제부혁신성장실장 민경설 죄송합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그러니까 이 전략수출기금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뭐, 아까 권영세 위원님께서 무보로도 가능하지 않냐라는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 주시지요. 그것을 매듭을 짓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기본적으로 무보도 어차피 수은처럼 리스크 관리를 할 수밖에 없는 조직이고요. 예전에 조선사에게 RG를 지나치게 많이 줬다가 RG가 대규모 부도가 나면서 무보 자체가 기본자산이 왕창 까져서 엄청나게 곤혹도 겪고 국회에서도 굉장히 논란이 됐던 게 기억이 나고 그로 인해서 무보도 나름대로 자기 관리를 굉장히 철저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무보를 통해서 이 일을 대신하자고 하기에는 이것은 너무나 큰일이기 때문에, 한두 번 잠깐은 그럴 수 있지만 대내외적으로 자기가 본업으로 할 수 있다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훗날 나중에 무보의 회사 자체의 존립 문제도 다시 등장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안으로 정부의 기금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위원님들 이해가 되셨겠지요?

○박수영 위원 예, 뭐 좋은데, 이해는 되는데……

그러면 수은에다 기금을 만들면 이 기금은 익스포저가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정부 기금이라서 날려도 상관없다? 수은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까, 그러면?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이것은 분리……

○박수영 위원 무보는 안 되고 수은은 되는 이유가 뭐예요?

○재정경제부전략경제정책관 고광희 담당 국장입니다.

전략수출기금은 수은한테 저희가 위탁을 하기는 하지만 수은의 계정과는 구분계리 될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대규모 수출금융에 대해서는 수은, 무보 그리고 기금 이렇게 세 가지가 리스크를 세어링하면서 분산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한쪽에 익스포저를 과다하게 하는 것을 방지하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박대출 위원 리스크 총합은 같은 거예요.

○소위원장 정태호 그 정도로 해 주시고요.

아까 박대출 위원님이 제안해 주신 부분은 당장 답을 원하신 건 아닌 것 같으니까 목적부터 다시 좀 심의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러면 아까 60페이지 총론 부분 목적과 관련된 조항에서 ‘대규모, 장기 등 수출금융’ 이렇게 하자는 거고 그다음에 아까 문장이 어떻게……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수출금융 수요에 대응하여 정책금융기관의 기능을 보완하고’ 이 부분을 추가하고 싶은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그것에 대해서 위원님들 어떠신가요?

○진성준 위원 취지에 동의하고요. 다만 자구는 조금 조정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이요.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정의 조항에서는 2호에 전략수출이라는 정의를 ‘1호에 따른 수출로서 국민경제 및 연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수출을 말한다’를 현재 전문위원회에서는 ‘대규모, 장기 수출’로 하고 ‘대령으로 정하는 수출’로 해서 한정하자고 말씀 주셨는데 이 부분은 전략수출의 정의보다는 기금의 지원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용도에다가 적고 전략수출 정의는 그대로 두기를 저희는 희망합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전문위원님, 어떠세요?

○전문위원 임명현 전략수출의 범위가 어떠냐에 따라서 전체적인 기금의 운용 규모나 이런 게 달라질 것 같아서 이것을 가급적이면, 지금 공청회에서도 계속 지적됐지만 기존에 수은이나 무보에서 하는 것하고 중복될 가능성을 우려를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정의에서 이렇게 대규모, 장기 수출 등으로 제한하면 그런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겠다 해서 저희가 그렇게 제안한 겁니다.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저희는 이 중복 문제는 결국 용처에서의 중복이기 때문에 지원 부분에서 이것을 클리어하게 쓰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고요. 이 정의 조항은 그대로 전략수출의 개념적인 정의인 거지 저희가 지원 대상을 그렇게 한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서 그대로 두자는 차원이고요. 만약에 여기에서 이렇게 단서를 줄이게 되면 기여금의 대상도 같이 줄어들어서 전반적으로 스콥(scope)이 좁아집니다. 그러면 수은이 단독으로 절충교역이나 예를 들어서 구매자금융을 한 경우에는 기여금 부과도 안 되고 지원도 안 되고 그런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은 이상하다. 사실은 전반적으로 국가로부터 혜택을 받은 사람은 여기다 기여금을 내고 지원은 대규모, 장기에다가 하는 것이 저희 논리로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진성준 위원 그렇다고 할 때 원안을 유지하자고 그러면 한정에 의원안이요, 안도걸 의원안이요?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한정에 의원안입니다.

○진성준 위원 한정에 의원안?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예.

○소위원장 정태호 위원님들 의견 주세요.

조인철 위원님.

○조인철 위원 1조(목적)에 지금 이미 대규모, 장기 수출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다가 다시 넣어서 전략수출을 제한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큰 쟁점이 되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진성준 위원 저도 그냥 정부 의견을 받아서 전략수출은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이후에 구체적인 용처를 정할 때 한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정부안대로 하려고 그러는데 이의 없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이요.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그러면 67쪽까지는 저희가 전문위원님 의견에 동의를 합

니다.

그리고 68쪽 가시면요.

○소위원장 정태호 67쪽까지 다 동의입니다.

67쪽까지 위원님들 의견은 없으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68쪽으로 갑니다.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68쪽에 가면 제5조의 지원계정의 설명입니다. 여기서 2항 1호에 보면 ‘대규모, 장기, 신시장 등 전략수출을 위한 수출금융 지원’이라고 표현한 것을 전문위원회에서는 앞에 정의를 했으니 ‘전략수출’로 같음하자고 했는데 이것을 다시 원래대로 돌려 가지고 여기서 구체적인 내용을 적어야 됩니다. 신시장은 모호성이 있다고 해서 지우고 저희들이 제안하는 바는 ‘대규모, 장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략수출을 위한 수출금융 지원’ 이렇게 하면 아까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령 위임까지 여기서 다 같이 받게 됩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어떠신가요?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성준 위원 좋은데 이것도 자구가 조금 어색한 것 같습니다. ‘대규모, 장기 등’ 이렇게 붙이는 게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것 좀 적절하게 자구 수정해 주십시오.

○박수영 위원 원래 사실 이 법은 ‘수출산업의 대규모, 장기 수출금융 수요에 대응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앞을 나중에 수정할 거예요. 할 때 같이 맞춰서 고칩시다.

○진성준 위원 예, 간사님들이 자구 수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이요.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그리고 70쪽입니다.

현재 한정에 의원안에서는 기술료와 관련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에 해당되는 금액이라고 했는데 공청회에서도 나왔고 산업부 의견도 그렇고 이것은 비율을 바로 딱 정하는 게 아니고 범위와 기준을 위임을 받아서 부처 간에 좀 더 협의를 해서 정확하게 정리를 하자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비율’ 대신에 ‘범위와 기준’으로, 비고에 전문위원님도 써 주셨는데요. 그 의견으로 정리해 주시면 저희가 집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대출 위원 이 조항은 제가 요구한 그 조항이 근본적으로 검토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박대출 위원 ‘2항제3호에 따른 지원을 받은 회사등으로부터 회수한’……

○소위원장 정태호 이것은 정부 기술료에 관한 얘기가 아닌가요? 이것은 기술료에 관한 건데.

박수영 위원님.

○박수영 위원 이 부분은 아까 안도걸 의원님 말씀이 맞는 것 아닌가요? 정부 기술료는 산업부·과기부 이런 데서 기술료 받은 것들을 자기들이 지금 잘 쓰고 있다는 말이에요, 국방도 마찬가지이고. 그런데 이것을 이쪽으로 다 끌어넣어서 꼭 재정부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잘하고 있잖아.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그중에서 수출로 인해서 생긴 기술료의 경우에는 저희가 받은 다음에 저희가 이것을 어떻게 쓰냐 하면 이 기술료는 수출금융 지원에 쓰는 게 아니고요. 생태계 지원, 그러니까 그 분야의 생태계 지원에 다시 환류하고 안도걸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 쓰고 있는 대로 보조나 그런 것 하지 말고 투자를 해라라고 해서 지분 투자를 하기 위해서, 뒤에 조문에 가면 이익으로 받은 것은 지분 투자만 할 수 있도록 조항을 다시 걸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오히려 생태계를 살리는 쪽으로 가겠다. 이 기능을 이 기금에서……

○박대출 위원 그 기술료는 그러면 그쪽에서는 안 쓰는 거예요?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일부분만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 범위와 기준을 정해서 수출과 관련된 의미 있는 것만 저희가 하고 기술료 중에도 내수를 통해서 하거나 여러 가지 방법을 다시 상황에 따라 볼 때 자기들이 원래 쓰는 건 쓰고 일부 우리 쪽에다가 하겠다는 것을 부처 간에……

○박대출 위원 기술료의 총합이 늘지는 않는 거지요?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그것은 아닙니다.

○진성준 위원 예, 그러시지요.

○박수영 위원 그런데 산업부가 잘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그걸 꼭 재정부에서 가져와야 됩니까?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산업부가 잘하느냐 하는 부분은, 저희는 이제 생태계 지원을 위해서 밑에 있는 중소기업이나 벤처 쪽에다가 지분 투자를 하려는 건데 현재 그 기술료를 받아서 기업의 어떤 중간 기술료로 운용을 한다든지 다시 그 기업에 지원하되 주로 보조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알아서 해라, 대신에 우리는 일정 부분을 가져와서 투자를 해서 생태계를 키우겠다.

○박수영 위원 그러면 일정 부분은 산업부하고 어떻게 합의한 거예요? 산업부하고 기재부하고 합의한 겁니까, 이것?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예, 그 옆에 보시면 재정부·산업부 의견 합의된 내용이 있는데요. 일정 비율을 하면 곤란하다, 그것은 안 되고 대신에 범위와 기준을 다시 정하겠다고 이렇게 해서 합의를 봤습니다.

○박수영 위원 그러니까 법률에서 합의가 안 되니 시행령으로 미루기만 한 거네, 보니까.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아니요, 그 시행령 내용이 예를 들어서 저희가 처음에 요구한 것은 기술료 중에 수출로 득 본 거라면 우리가 받아서 쓰는 게 맞겠다 했는데 수출에 대한 내용을 굉장히 발라내기가 어렵다라고 해서 그러면 우리가 비율로 가겠다고 했더니 비율로는 너무 무디니 나중에 봐서 수출을 발라내고 싶다고 해서 그 부분을 합의를 하고 범위를 정하기로 한 겁니다.

○박대출 위원 그러니까 나중에 협의하자 그렇게 합의한 거네.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그런데 원칙은 정해져 있습니다.

○박수영 위원 그런데 차관님, 아까 수은하고 무보 숫자 가짜 뉴스로 얘기하던 것처럼 그런 것은 아닙니까? 산업부에서 내가 듣는 얘기하고 달라서 하는 얘기에요. 산업부는

이것 합의하지 않았는데……

○소위원장 정태호 실무자 답변해 보세요.

○재정경제부전략경제정책관 고광희 전략경제정책관입니다.

산업부하고 저희가 합의한 것은 일단 어느 규모로 금액을 이관할 건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숫자에 대한 합의를 하지는 않았고요. 일단 말씀드린 대로 범위와 기준에 대해서 하기로 했는데 일단은 산업부가 지금 걷고 있는 기술료 중에서 일부를 이쪽으로 이관하는 것은 합의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 구체적인 숫자에 대한 것은 범위와 기준을 시행령에서 정할 때 같이 한번 다시 이야기해서 합리적으로 정하자, 여기까지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박대출 위원 지금 이 부분은 틀리면 또 곤란한 문제입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임명현 일단은 위원님들 아셔야 될 사항이고 회의록에 게재가 되니까 저희 의견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R&D 추진하는 방식이 크게 두 가지 방식입니다. 지금까지 계속 추진하는 방식이 출연형 R&D입니다. 그래서 출연금을 통해서 R&D를 수행하고 거기서 생기는 기술료를 가지고 재투자하고 재출연하는 거지요. 이런 방식으로 지금 써 왔는데 이 기금에서 하는 방식은 새로운 방식입니다. 투자형 R&D입니다. 지분 투자를 통해서 투자수익이 생기면 그걸 가지고 다시 또 R&D에 재투자하고 이런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생태계가 다릅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기존 출연형 R&D에서 생긴 기술료를 여기다 갖다 쓰자는 거라서 기존의 큰 양대 축에서 보면 약간 미스매치가 좀 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박수영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산업부장관 같으면 당연히 산업부에서 그냥 하고 싶어 하지요. 이것을 떼어서 재경부 주겠다 이렇게 합의를 쉽사리 했을 리가 없고 내가 산업부 쪽에서 들은 얘기도 이 부분 아직 합의가 안 됐다고 들었는데 차관님이 합의가 됐다고 하시니 분명하게 해 달라는 뜻입니다.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그 이후에 회의를 했습니다. 초반에 아마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저희가 회의를 한번 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 가지고 문구를, 이 범위의 기준을 바꾸자 이 부분을 확실히 합의를 했습니다.

○박수영 위원 좋아요. 제가 들은 초기 이후에 회의가 있었던 모양인데 그러면 실장이 그 회의 날짜하고 회의 안건하고 회의에서 결론하고를 나한테 갖다 주세요, 산업부하고 들은 얘기가 다르니까. 아까 차관이 틀렸기 때문에 내가 자꾸 의심하는 거예요.

○소위원장 정태호 저한테도 주세요.

○진성준 위원 결국 대통령령으로 정리되려면 부처 간에 합의가 있어야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소위원장 정태호 그러면 정부안대로 정리를 하고 갑니다.

다음이요.

넘어가면서 얘기할게요.

71페이지, 투자 의미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비고란에 돼 있는데 이것에 대한 의견은 어떠세요, 정부?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저희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동의입니다.

그다음에 76페이지, 전략수출금융기금채권의 발행인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특별하게 없지요.

81페이지, 단서 삭제, ‘심의회 생략 시 기금 운영의 투명성·공정성 우려 고려하여 단서 삭제한다’ 되어 있는데 정부의……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정부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수용인가요?

위원님들 이견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갑니다.

그다음에 83페이지, 수정의견이……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두 건 다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수용인가요?

위원님들 의견이요.

큰 문제는 없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84페이지, 전략수출상생기여금입니다. 아까 쟁점이 됐던 건데……

가다 보면 90페이지, 수정의견에 ‘전략수출 계약이 체결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80페이지 이 부분에 대한 정부 의견은 일단 어떤 거예요?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90페이지 말씀이신 거지요?

○소위원장 정태호 90페이지.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현재는 12조 1항에 대한 수정의견은 저희는 수용하는 바입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여하튼 기여금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하시니까……

○박대출 위원 이것은 다 같이 검토되어야 될 문제지요.

○소위원장 정태호 특별히 아까 또 박대출 위원님께서 말씀도 계셨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좀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지를 고민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저희 자료를 좀……

○소위원장 정태호 자료는 다 주셨지요?

○박수영 위원 좀 자료 주시고.

차관님, 그 사이에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차관님, 여기 비고란에 나와 있는 것은 기여금을 내는 사람도 전략수출 분야에서 지원을 받은 자로 한정한다고 하는 것에 동의를 지금 하셨어요.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아닙니다.

○박수영 위원 아십니까?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예.

○박수영 위원 그러면 뭐에 동의하신 거예요?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그 문구에 동의했는데요. 현재 12조 수정의견에 ‘전략수출 계약이 체결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이 부분은 저희가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박대출 위원 그 부분을 동의하는 게, 이것을 없애라는 건데 지금 동의고 말고 없단니까, 그것은 검토를 해야 되는 사안이지.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박수영 위원님 질문은, 이 비고란은 전문위원님의 메모입니다.

○박수영 위원 그러니까 전문위원님이 조항을 이렇게 바꾼 것은 기여금 납부의무자도 전략수출 지원받은 사람으로 한정하자는 뜻 아닙니까?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그런데 제가 앞쪽에 정의 조항에서 전문위원님 의견을 달리하게 설명을 드려서 원안으로 해 주셨기 때문에 이 조항을 그대로 받아도 그것은 일치하지 않게 하게, 기여금은 다 받고 대상은 대규모 장기로 가고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박수영 위원 그러니까 대규모 장기 아니더라도……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받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박수영 위원 받을 수 있다? 기여금을 걷는다?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예.

○박수영 위원 대규모 장기 아니면 정부가 보증하지 않아서 정부로부터 득본 게 없는 데 그 사람한테 왜, 그 기업에 왜 기여금을 받아요?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아닙니다. 정부…… 구매자금융은 받는데 그중에 대규모 장기가 아닌 경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은이 혼자 한 경우. 대규모는 지금 수은과 기금이 협조용, 같이 간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수은이 단독으로나 아니면 수은과 무보가 둘이서 한 거 이런 경우에는 현행 전문위원님 말씀대로 따르면 저희가 기여금을 못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앞에 정의 조항에서 전략수출은 원래대로 가고 용처만 대규모 장기로 하자고 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정의 조항에 따라서 전략수출 계약이라는 것은 광의의 전략수출이기 때문에 다 받을 수 있게 돼 있어서 제가 수용을 한 겁니다.

○박수영 위원 그러니까 정부 입장은 최대한 많이 받겠다 이거네요. 그렇습니까?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구매자금융을 받으면 다 같이 받아야 된다 이런 겁니다. 누가 준 거에 따라서 누구는 받고 안 받고는 곤란하다는 말씀입니다.

○박수영 위원 납득이 안 되는데……

○박대출 위원 이 표는 완전 주먹구구예요. 이렇게 썼는데 우리가 앞으로……

○소위원장 정태호 이 표를 가지고 한번 설명해 보세요.

○박대출 위원 앞으로 이런 게 또 필요하다. 썼으면 그것은 기존의 재원이 있는데 그거 쓰면 되는 거고……

○소위원장 정태호 설명해 보세요.

○재정경제부전략경제정책관 고광희 전략수출금융기금 재원 구성과 관련해서 저희가 용처라든가 확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려고 하는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연간으로 보면 저희가 전략수출기금을 수출금융지원계정과 산업생태계지원계정으로 2개로 구분 계리해서 운영을 할 예정이고요. 수출금융지원계정은 연간 총 4조 원입니

다. 4조 원의 금융지원을 할 예정이고요 그중에서 2조 원은 대출입니다. 대출은 재원을 전액 정부보증채권으로 발행해서 공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보증도 약 2조 원 수준을 저희가 공급할 예정인데 그 재원은 정부나 정책금융기관의 출연금입니다. 이 부분은 정부 기획예산처와 별도의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규모가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업들이 내는 상생기여금은 약 270억 원 수준입니다. 상생기여금 이 부분은 후술하겠지만 한 450억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수출금융지원계정으로 60%를 쓰고 상생기여금의 40%는 산업생태계지원계정으로 쓸 예정입니다.

그리고 산업생태계지원계정은 연간 한 1500억 수준으로 저희가 지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상생기여금 180억 그리고 기술료 약 250억 이 정도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내는 상생기여금 연간 450억 원 추정치입니다. 최근 5년간의 구매자금융 집행액 추이를 보시면 21년 5.1조였다가 22년 5.4조 그리고 24년 14.7조, 25년 19.9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7년도 예상을 하면 기여금 징수액은 약 458억인데 구매자금융 집행액은 연간 증가율을 곱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22.9조 원 정도가 공급될 거라고 그렇게 추정을 하고.

실제로 저희가 구매자금융 중에서 기여금으로 부과 대상을 하려고 하는 것은 수출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수출계약과 결부돼서 구매자금융이 집행된 경우에 한정해서 기여금을 부과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전 것을 죽 리스트업을 해서 봤더니 구매자금융의 약 40% 정도가 거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22.9조 원의 40%가 9.2조고요 9.2조에 저희가 생각하는 기본요율 50bp를 곱하면 약 458억 정도가 나옵니다.

○박수영 위원 이 자료 열심히 만들어 온 것 같은데 제가 부탁드렸던 것은 기업의 수익률 아까, 연간 뭐 있잖아요. 영업이익률이 3.5% 내지 2.5%밖에 안 된다고 한 부분하고 20%가 있어서 도대체 기업들이 그러면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느냐 하는 숫자를 보자고 했는데 그 숫자는 왜 안 주시는 거예요?

○재정경제부혁신성장실장 민경설 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부전략수출지원과장 김종현 일단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1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 수출금융 중에서 구매자금융에 해당하는 부분은 약 5.6%, 한 20조 원 정도로 되고요. 그다음에 구매자금융 중에서도 저희의 기여금 부과 대상이 되는 경우는 수출계약 전에 구매자금융의 지원이 계약과 결부된 경우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 40% 정도 수준으로 저희가 기존 자료를 통해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부과요율 같은 경우는 0.5%, 법에서는 지금 1%로 최대 상한을 해 뒀지만 시행령에서 0.5%로 규정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밑에 실제 25년도 데이터를 기반으로 추산한 데이터입니다. 일단 A사, B사, C사 다 모두 방산기업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괄호 안에 있는 수치 말고 그냥 매출총액과 영업이익은 예를 들어서 A사의 25년도 전체 매출이 9조 5000억 이 정도, 영업이익이 2조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집행금액으로 나온 것은 구매자금융, 집행된 금액을 쓴 건데요. 일단 저희가 수은에서 집행된 구매자금융 데이터는 아주 정확하게 있는데 무보거가 급하게 만드는 과정에서, 이것은 무보와 수은이 1 대 1이라는 전제하에서 집행금액

을 수은 집행금액의 2배로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그러면 집행금액이 나오면 거기에 0.5%를 곱해서 기여금 징수액이 A사의 경우에 한 139억, B사가 한 105억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고요.

그러면 영업이익 중에서 기여금의 비중이 얼마가 되느냐를 보시면 예를 들어서 A사의 경우에 2조 원 중에서 기여금이 140억이니까 한 0.69% 정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고, 영업이익률의 변동은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의 비중이 A사의 경우에 한 21% 정도가 나오는데요. 기여금을 납부하고 난 이후에 영업이익률의 하락폭이 약 0.07%포인트 정도 된다는 것입니다.

괄호 안의 수치를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괄호 안의 수치는 뭐냐면 A사의 전체 매출이나 전체 영업이익이 아니고 구매자금융이 집행된 그 수출로부터의 매출이 얼마고 그 수출 건으로부터의 영업이익이 뭔가의 데이터가 필요한데 사실 이것은 공시 데이터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추산을 한 것입니다. 어떻게 추산을 했냐면 구매자금융 집행은 보통 최대 80%까지 집행을 하니까 집행금액 80%의 역수를 해서 곱하면 이 집행금액이 80%가 되기까지 수출액이 추산이 됩니다. 이게 괄호 안에 들어 있는 3조 4000억이고요, A사의 경우에.

그다음에 이 기업의 25년도 영업이익률, 지금 여기서 나온 전체 이 기업의 9조 5000억에서 2조인 이 영업이익 비중을 비례로 계산해서 그러면 이 수출 프로젝트로부터의 영업이익이 괄호 안에 있는 금액 정도가 된다고 계산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출 프로젝트로부터의 영업이익 대비해서 기여금의 비중을 하면 한 1.88% 정도가 된다는 것이고요. 그것이 영업이익률 변동 쪽에 보시면 그러면 이 수출 프로젝트로부터의 영업이익률이 한 0.4%포인트 정도 하락하는 효과가 기여금 부과란에서 발생한다는 것이고 이것은 A사, B사, C사의 경우에 보시는 대로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일관되게 저희 추산치 기준으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수영 위원 몇 년도 영업이익으로 예상한 겁니까?

○재정경제부전략수출지원과장 김종현 25년으로……

○박수영 위원 25년, 그러니까.

이게 연도별로 영업이익의 등락이 상당히 크고, 아까 공청회에서 나온 얘기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기 전에는 2019년에만 흑자를 봤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과거에 참 고생고생하다가 이제 버는데 여기다가 지금 부담금을 매기겠다는 거 아니니까? 기여금을 매기겠다는 거 아니에요?

○재정경제부혁신성장실장 민경설 위원님, 다시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금 말씀드렸던 그 내용, 특히 방산과 관련된 수출금융이 최근에 와서 많이 증가가 된 거고 그에 연관돼 가지고 영업이익이 많이 늘어난 부분이 있고요. 과거에 영업이익률이 5%, 3% 됐을 때는 사실 수출금융 자체도 거의 없었거나 일부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때와 관련돼서 기여금을 부과하더라도 실제 굉장히 작은 부분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박대출 위원 지금 이 제도가 책상머리에서 짠 안 같아요. 우리 기업의 현실을 너무 모르는 것 같아요.

차관, 영업이익률이 20% 되는 회사가 대한민국에 몇 퍼센트 될 것 같아요? 지금 영업이익률이 20%가 되는 기업이요 이것이 최근에 72%까지 되는 기업이 나오고 지금 주식 상황에 힘입어서 이렇게 나오지. 제조업이 20% 되는 영업이익률이 나오는 기업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말이지요.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지금 이제 방산에서 굉장히……

○박대출 위원 잠깐만요.

영업이익률이 가장 피크에 올랐을 때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지속가능한 제도가 되지 못해요, 이거 이렇게 만들면.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말씀드려도?

○박대출 위원 예, 해 보세요.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C사 관련 마지막 보시면요 7%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도 보면 7.4가……

○박대출 위원 7% 되는 회사도요 기업이 돈 잘 버는 회사예요.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7.4가……

그런데 저희가 지금 현재 수출금융을 받게 되면 그 부분에서 이익이 꽤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박수영 위원 절충교역은 계산 안 해 보셨습니까? 절충교역 하면 거기는 R&D라든지 교육훈련이라든지 AS까지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 하면 지원 규모가 훨씬 더 커질 텐데 그러면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더 커질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부분은 계산 안 해 본 건가요?

○재정경제부전략경제정책관 고광희 그 부분은 말씀드리면 계약서상에 절충교역이라 하면 수출산업협력금액이라 그래서 인정가치로 해 가지고 그 금액이 따로 써진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자를 공급하기로 하는 수출계약하고 별도로 절충교역에 대해서는 수출 계약서에 서로 간에 인정하는 교육이든 기술이전이든 금액으로 환산해서 써 났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기준으로 저희는 3~5%까지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박수영 위원 알고 있는데 그 경우에 영업이익률의 변동 이 부분은 계산 안 해 보셨나 이 말이지요. 지금 구매자금융만 계산하신 것 아닙니까?

○재정경제부전략경제정책관 고광희 예.

○박수영 위원 그런데 구매자금융 규모보다 절충교역 규모가 훨씬 크니까 절충교역 쪽의 것은 왜 없냐. 이게 구매자금융 플러스 절충교역이라면서요. 여기도 영업이익이 또 떨어질 것 아닙니까?

○재정경제부전략경제정책관 고광희 저희가 말씀드린 것은 절충교역 규모 전체에다가 부과하는 게 아니고요 절충교역 중에서도 서로 간에 일부 인정하고 있는 인정가치 있지 않습니까? 기술이전을 해 줬던 대가로 상대방의 이것은 한 100억 정도 수준의 인정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다 그렇게 해 준 그 금액의 3%를 떼다는 얘기입니다.

○진성준 위원 정부기여금만 간주한다는 말이잖아요.

○재정경제부전략경제정책관 고광희 그렇습니다.

○진성준 위원 절충교역 중에서도 정부가 이 정도는 기여하고 너희들한테 특혜를 줬다, 혜택을 줬다라고 하는 부분만 인정해서 한다는 거지요?

○재정경제부전략경제정책관 고광희 예, 맞습니다, 그것도 금액으로 환산돼 있는 금액.

○박수영 위원 개념은 알겠는데 그걸 넣으면 영업이익률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더 커질 것 아닙니까. 그 계산을 해 봤냐고 물어보는 거지, 제 질문은.

○재정경제부전략경제정책관 고광희 그 계산을 별도로 하지는 않았습니니다.

○박대출 위원 그 계산도 안 하고 그냥 ‘금리 혜택 3분의 1 수준에 불과’, ‘영업이익 대비 미미한 수준’, ‘과도한 부담으로 보기 어려움’ 이런 문구를 함부로 넣어도 되는 거예요, 이것? 너무 기업 현실 모르는 것 같아요.

○소위원장 정태호 이 부분은 쟁점이니까 나중에 좀 더 접촉을 하도록 하고요.

○박수영 위원 연도별하고 절충교역까지 넣어서 한번 계산해서 주세요.

○소위원장 정태호 91페이지 수정의견, 낙찰조건부 지원에 대해서는 어떤가요?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예, 저희는 수용입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수용이지요? 특별한 의견 없으실 것 같고요.

92페이지의 수정의견에 대한 의견은?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수용입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특별한 건 없는 것 같고.

○박수영 위원 잠깐만요.

원전은 산업부 쪽에서 반대했는데, 조선하고 해양플랜트는 해수부 쪽에서 반대한다고 하던데 그 부분은 제외 안 합니까? 원전 부분은 제외했잖아요. 그런데 조선하고 해양플랜트는 해수부 쪽에서 빼 달라고 한다면서요.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실무자가 답변할 텐데, 조선의 경우에는 이런 구매자금융이 거의 작동 안 하고 자기가 받아서 직접 자기 쪽에서 금융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대상이 되기 어렵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답변 한번……

○박수영 위원 그러면 아예 빼 버리면 되잖아요, 대상이 안 되면.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가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박수영 위원 해양플랜트는?

○소위원장 정태호 답변하세요.

○재정경제부전략경제정책관 고광희 조선이랑 해양플랜트 쪽은요 기본적으로 구매자금융을 하더라도 사전에 계약과 결부돼 가지고 하지 않고요 자기들이 별도로 금융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선주가 구매자금융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수은·무보가 지금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수출계약에 영향을 준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기여금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조선과 해양플랜트는 대부분 빠지고요. 저희가 과거 5개년도 내역서를 죽 다 살폈고요 거기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런데 조선해양플랜트를 저희가 명시적으로 빼지 않는 이유는 여기도 수출계약 전에 구매자금융이 수출계약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줬다 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다른 형평성 차원에서 기여금 부과 대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박수영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는 조선해양플랜트협회에서 저한테 준 자료입니다. 이 자료에 보면 자기들이 이것 맞지 않으니까 경쟁력 약화가 되기 때문에 선박과 해양플랜트 수출은 제외해 달라고 명시적으로 나와 있는데 협의했습니까?

○재정경제부혁신성장실장 민경설 위원님, 그래서 저희들이 그 자료를 받아 가지고 저희 실무자들이 사전에 만나 뵙고 그 의도와 구체적인 사례를 충분히 설명드려서 그쪽에서 받아들였습니다.

○박수영 위원 이게 어제 온 자료인데 언제 설명했는데 그래요? 그쪽 입장하고 기재부 입장하고 다른 겁니까? 뭐예요, 도대체?

○재정경제부전략수출지원과장 김종현 담당 과장입니다.

○박수영 위원 오늘 회의했어요?

○재정경제부전략수출지원과장 김종현 아닙니다. 한 3월 정도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박수영 위원 그런데 왜 어제 이 자료를 갖고 와서 나한테 설명합니까?

○재정경제부전략수출지원과장 김종현 그런데 그때……

○박수영 위원 협의가 제대로 된 것 맞아요?

○재정경제부전략수출지원과장 김종현 예, 그때 한정에 의원님 실에 조선해양플랜트협회 쪽에서 제기 사항을 드려 가지고 저희가 같이 가 가지고 그 자리에서 설명을 하고 조선해양플랜트 쪽 협회에서 그 설명에 대해서 납득했고 감사하다고 저한테 분명히 얘기를 했었거든요.

○박수영 위원 말로?

○재정경제부전략수출지원과장 김종현 예. 그 부분은 제가 문자메시지로 갖고 있는지는 정확히 봐야 되겠습니다만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대출 위원 납득했고 감사하다는 얘기하고 받아들인다 하고 다른 얘기에요.

○재정경제부전략수출지원과장 김종현 그런데 왜냐하면 수출계약 전에 결부가 돼야 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조선협회에서도 이것이 부과 대상이 되면 안 된다고 했던 이유는 계약 전에 결부되는 게 아니고 계약 후에 따로 그냥 배를 발주한 선사가 파이낸싱을 어떻게 할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구매자금융을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선사가 구매자금융으로 썼다고 해서 이걸 자기네가 지원받은 것이 아니다, 이건 계약과 결부된 게 아니기 때문에 자기네는 기여금의 대상이 되면 안 된다는 차원에서, 조선업은 다르다라는 측면에서 설명을 했던 거라 저희도……

○박수영 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계약 체결 전에 구매자금융 한 것만 적용한다고 아까 계속적으로 보고했잖아요. 그러면 이건 아예 빼 줘도 되는 거잖아요.

○재정경제부전략수출지원과장 김종현 그런데 조선업에서 원천적으로 그런 일이 반드시 없다라고 단정까지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발생한다면 동일한 기준에 따라서 부과를 해야 된다는 것이 저희의 설계되었습니다.

○박대출 위원 그쪽 입장이 다르지, 완전히.

○진성준 위원 맞는 얘기네요. 그게 맞는 얘기지. 그럴 것 아닙니까?

○소위원장 정태호 차관님 말씀해 보세요.

○조인철 위원 혹시 모르는 그런 일이 발생을 했을 때 거기에 통보하겠다는데……

○박대출 위원 업계는 아니라는 것 아니겠어요.

○진성준 위원 선박협회가 오해가 있어서 설명을 해 줬고……

○박수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설명한 부분 정확하게 한번, 언제 설명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 주시면 내가 협회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나한테 와서 설명을 할 때는 합의가 안 됐다고 했다고.

○재정경제부전략수출지원과장 김종현 예, 저희가 이메일로도 자료를 전달했거든요, 외부에. 그때 기록까지 다 남아 있습니다.

○박수영 위원 정리해 주세요.

○소위원장 정태호 저 설명이 합리적인 것 같은데……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는 없나요?

○박수영 위원 아니, 그래서 확실한 건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은·무보 문제를 가짜뉴스를 퍼트리니까 내가 자꾸 확인하고 싶어 지는 거라니까요.

○진성준 위원 간사님, 자꾸 가짜뉴스라고까지 얘기하십니까? 저는 이해가 되는 얘기구 먼.

○박수영 위원 아니, 그런데 위원회에서 진실이 아닌 걸 얘기하면 안 되지.

○진성준 위원 아니, 일반적으로 그래 왔다는 것 아닙니까. 아주 예외적인 사건이 한번 있었다는 거고요.

○박수영 위원 한 번 있었는지도 봐야 됩니다, 정말 한 번이었는지.

○진성준 위원 그걸 가지고 자꾸 그런 얘기로 하지 마시고. 이건 완전 불신에 기초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럴 것까지 있는 문제입니까?

○박수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 그렇게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해 주시냐 이거지요. 제가 사실도 아닌 걸 얘기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차관이 얘기한 거지.

○진성준 위원 듣기에 불편합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잠깐만요.

92페이지 수정의견에 대해서 어떠신가요?

○진성준 위원 ‘그 밖에 수출계약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감면할 수 있다’ 이것 아닙니까?

○소위원장 정태호 이걸 정부는 수용한다는 거잖아요?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예, 수용입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그러면 동의요.

다음 95페이지 수정의견 7항인가요?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예, 정부 수용합니다.

○박대출 위원 이것은 근본적으로 다르지요. 감면이라는 게 기여금이 존재한다라는 걸 전제인데 이 기여금이 존재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문구를 손본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고, 이건 넘어가세요.

○소위원장 정태호 존재한다라는 걸 전제로 일단은 진행하고 나서 보자 이거지요.

정부 수용이지요?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예, 수용입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96페이지 제8항 수정의견에 대한 정부 입장이요?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수용입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위원님들 의견이요?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 동의지요?

○진성준 위원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그다음에 98페이지 부칙입니다.

103페이지 수정의견 17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정부 입장이요?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수용입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위원님들요?

(「이건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106페이지 부칙 제2조 법 시행을 위한 준비, 정부 입장이요?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수용입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위원님들요?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없지요?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3조가 있습니다. 부칙 3조, 106페이지 같은 페이지입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106페이지에?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특례……

○소위원장 정태호 아, 단서 삭제……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저희는 단서 삭제는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단서를 삭제한다면 전체를 삭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앞부분은……

○소위원장 정태호 2조 전체를 삭제한다고요?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그렇지요. 한정에 의원안 2조 전체, 수정의견 3조 전체.

○소위원장 정태호 한정에 의원의 2조, 수정의견의 3조 전체를 삭제한다?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예. 제출했는데 확정된 걸로 간주하지 않으면 제출할지 말지는 저희가 좀 더 고민을 해야 되는데 바로 법이 공포하자마자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만 남으면 운영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박수영 위원 기금운용계획안은 국회에 제출하는 것 아닙니까, 원래?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필요할 때 저희가 제출했는데 만약에 연도가 끝나 갔을 경우에는 좀 고민이 되기 때문에 운영계획에 보면 수정동의안을 같이 내게 돼 있습니다.

○박대출 위원 그러면 삭제하지 않고 지금 정부가 할 수 있는 걸로 한번 바꿔 보세요. 계도는 필요해.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2조를 다 삭제하고…… 저희가 특례 없이 심의를 받게끔 제출을 해야 되는데 여기는 공포 후 지체 없이 제출하기 때문에 저희 준비사항이 그렇게 까지 못 따라갈 수도 있습니다.

○박대출 위원 그러면 여기에 조건을 넣어야지.

○박수영 위원 ‘지체 없이’만 빼면 되는 겁니까?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지체 없이’가 없으면……

○재정경제부전략경제정책관 고광희 이게 법 통과 시점에 따라 좀 다르겠는데요 만약

에 법 통과가 조금 늦어지는 상황이 벌어지면 2026년도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채권을 발행해 가지고 기금을 지원해야 됩니다. 그런데 채권을 발행하는 데도 시간이 걸리고 그다음에 기금운용계획을 26년도 걸 만들어서 실제로 했을 때 이걸 지원할 수 있는지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원래 단서조항이 빠지면 특례로서의 의미를 잃기 때문에 이 조항 자체를 아예 삭제해 주시면, 법이 빨리 통과되면 당연히 저희는 기금운용계획을 만들어서 국회에 제출드릴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상황이 약간 불확실하기 때문에 일단은 빼 달라 이런 말씀입니다.

○박대출 위원 그러면 국회랑 같은 조건으로 한다면 하면 되지 이걸 없애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진성준 위원 그런데 꼭 특례조항이 없어도 기금운용계획은 국회의 심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그렇습니다, 예.

○진성준 위원 그게 일반법에 의해서 해야만 하는 정도의 의무가 있다는 거지요?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예.

○소위원장 정태호 어떠신가요, 위원님?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으나 없으나 해야 된다는 거니까……

그러면 정부 의견 동의하나요, 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명현 예.

○소위원장 정태호 전문위원도 동의했습니다.

그러면 일단 조문 심의는 다 끝났는데, 아까 기여금 문제 그 부분만 남아 있는데, 간사님 어떻게……

○박수영 위원 아까 기여금 문제는 기업으로부터 400억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자료를 보니까 450억인데, 450억 원 정도라면 정부재정에서 감당하는 것도 방법이다. 기업을 이렇게 불편하게 만들 필요 없이 450억이면 지금 정부의 씹씹이를 봐서는 그렇게 큰돈도 아니잖아요. 기업을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 필요가 있나, 정부가 다 내도 충분히 되겠다 이런 생각이기 때문에 기재부가 검토하고 따로따로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박대출 위원 제가 부연하자면 지금 재원 조성의 방법론으로 갖고 온 이 논리 자체가 뭐냐 하면 쉽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 우리가 5년 동안 이런 식으로 구매자금융을 써 와서 이만큼의 돈이 필요하니 앞으로 기여금은 이런 이런 정도의 규모가 필요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앞으로 5년 동안 해 온 그대로 쓰시면 돼. 논리적으로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저희가 기여금을……

○박대출 위원 아니, 표상으로 계산한 방식이 그렇게 됐다는 얘기예요, 계산한 방식의 의미는. 이만큼 필요한 돈이어서 앞으로 이만큼 필요한 돈을 이렇게 쓰겠다예요. 그러면 A에서 그대로 쓰면 돼. B에서 새로 만들 필요도 없어. 이 논리상으로 그런 거라고. 그러니까 제가 제안한 대로 정부가 이걸 다 충당을 하시는 게 좋겠다는 얘기니까 잘 검토해 보세요.

○진성준 위원 저는 기업도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일정하게 기여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고요. 그간에 여러 가지 방산산업을 비롯해서 대규모 수주 사업에 대해서 정부가 그

결 성사시키기 위해서 수많은 자원을 들여서 지원해 준 것을 비교해 보면 기업의 기여금 보다 훨씬 더 큰 혜택을 보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여기서 논의해서 결론 내기 어려우니 간사들 간에 한 번 더 협의해 주셨으면 좋겠고, 위원장님께서.

○소위원장 정태호 이렇게 할게요. 그러니까 더……

○김영진 위원 저도 한번 시간 좀……

간사님들끼리 소소위에서 논의를 해 주시는데, 저희들이 처음에 자료를 보기 전에는 이 금액이 기업에 과도하게 부담이 될 것 같은 분석이기는 했는데 실제로 1년에 458억이고 한 기업도 아니고 여러 기업들에 의해서, 단위기업이 현재 많지는 않지만 10개 기업 정도 된다 하면 n분의 1이라고 규모의 크기가 있는 상황이고 해서, 비율도 0.4% 이런 정도로 현재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해서 수익을 받는 경우고 그 산업의 생태계를 키우기 위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조금 고민하셔서 소소위에서 간사님이 협의하고 정부 측과 조정해 주시지요.

그런데 완전히 제로로 하자 이건 또 좀 그런 것 같아요. 정말 부담이 있다 하면 그런데……

○박대출 위원 세금 받잖아, 세금.

○김영진 위원 아니, 그런데 그런…… 사실은 대단히 큰 출연을 통해서 보증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런 목적이 달성되면 기금을 없애버린다, 차라리 이게 나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소위원장 정태호 조인철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조인철 위원 김영진 위원님이나 진성준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합니다마는 기업 입장에서 보면 이게 큰 돈이 아니기 때문에 수익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좀 내놓고 하는 게 자기들도 훨씬 더 떼떼하지 않을까요? 행동하는 데도 훨씬 떼떼해 보입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1차관님.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저도 한말씀만 드리면 정부 의견은……

위원님들 말씀처럼 정부가 리스크만 다 지고 수출기업은 그에 대한 이익을 갖고 가는 것과 관련해서 환류가 필요하다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법안을 제출한 취지고요.

하나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여기 계정이 2개가 나뉘져 있는데 수출금융지원은 채권 발행하고 섞어서 같이할 계획이지만 산업 생태계, 지금 방산의 이익이 주로 대기업에만 가고 있는데 중소기업을 육성하자는 취지는 그분들의 돈으로 하겠다는 취지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기여금과 기술료로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것을 채권 발행해서 하는 것은 저희들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일정한 정도의 기여는 최소한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하여튼 간사 간에 협의를 해서 결론을 내리도록 할 것이고요.

내일 아침 10시에 전체회의거든요.

○박수영 위원 이것 내일 어떻게 해…… 이렇게 쟁점이 많은데. 자료도 아직 다 안 냈잖아요.

○소위원장 정태호 아니, 지금 합의가 안 된 것은 그 부분에 대한 합의니까, 기여금 문

제니까…… 하여튼 그래서 일단은 끝나고 저랑 협의를 하시지요.

○박수영 위원 일단 끝나고 얘기합시다. 차관하고……

○김영진 위원 그래요. 차관하고 같이 협의하시지요.

○소위원장 정태호 다음,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들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 임명현 6항부터 8항까지는 앞의 전략수출법의 부수법들입니다. 그래서 그게 정해지면……

○소위원장 정태호 일단 설명을 다 들어야 돼요.

○전문위원 임명현 소위자료 154쪽입니다.

○진성준 위원 124, 154?

○전문위원 임명현 154쪽입니다.

국가계약법인데……

○소위원장 정태호 154요?

○진성준 위원 넘어간다고? 부담금관리 기본법도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전문위원 임명현 그것은 앞의 전략수출법에 기여금을 설치하기로 합의하시면 그 법은 그냥 자동으로 통과되는 거고요.

○소위원장 정태호 이것은 그냥 자동 통과예요?

○전문위원 임명현 예, 자동으로 따라가는 겁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우리가 더 논의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전문위원 임명현 예.

○소위원장 정태호 오케이.

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전문위원 임명현 예, 거기까지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이것은 그냥 우리가 특별히 논의가 필요 없다라는 얘기인가요?

○전문위원 임명현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그러면 다음.

○전문위원 임명현 제9항 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전문위원 임명현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처기획조정실장 김명중 기획예산처 기획조정실장 김명중입니다.

부담금관리 기본법의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는 저희 쪽에서 약간 이견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략수출기금에 관한 법률에서 기여금에 관한 부분이 정리가 되면 기여금은 신설이 되는데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는 일부 이견 사항이 있어 가지고……

○소위원장 정태호 말씀하세요.

○진성준 위원 그러면 할 수밖에 없겠는데.

○전문위원 임명현 저희가 수정의견이 따로 없는데……

○소위원장 정태호 수정한 게 없다면?

○전문위원 임명현 예, 없습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수석전문위원님이 수정한 게 없는데? 정부안대로 한다면 거잖

아요.

○전문위원 임명현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그런데 무슨 이견이 있어요?

○진성준 위원 그러면 문제 없어요?

○기획예산처기획조정실장 김명중 그러니까 기존 부담금과 R&D, 기존 부담금과 중복된다는 문제 이런 부분은……

○박수영 위원 몇 페이지의 뭘, 좀 보고 얘기해 주세요. 몇 페이지의 뭘 보면 됩니까? 무슨 조문을 보면 됩니까?

○소위원장 정태호 몇 페이지?

○박수영 위원 몇 페이지 뭘 보면 됩니까?

○전문위원 임명현 아마 착오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여기서 정하면 저희 의견하고 상관없이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아마……

○소위원장 정태호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기획예산처기획조정실장 김명중 예, 알겠습니다. 좀 마이너한 부분인데요. 죄송합니다. 이견 없습니다.

○박수영 위원 저기도 차관이 안 오서 가지고 지금…… 실장님이 발령받은 지 며칠 안 됐으니까……

○소위원장 정태호 잠깐만, 지금 부담금관리 기본법하고 수출입은행법은 자동으로 가는 거잖아요.

○전문위원 임명현 예, 자동으로 가는 거 맞습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지금 수석전문위원님 의견이 특별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전문위원 임명현 예, 없습니다.

○기획예산처기획조정실장 김명중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그러면 정부 의견을 굳이 낼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겁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기조실장님 오셨으니까 혹시 의견이 있다면 수석전문위원님이랑 협의를 해 주세요.

○기획예산처기획조정실장 김명중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그다음에……

○전문위원 임명현 소위자료 154쪽입니다.

개정안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을 체결할 때 그 이행기간을 일(日) 단위로 정하는 경우에 공휴일, 관계 행정기관 협의 소요기간, 관계 법령상 절차 소요기간 등을 고려해서 충분한 이행기간을 산정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오른쪽의 검토의견 보시면 중간에 이행기간이 충분히 제공되지 않는 경우에 계약상대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거나 납기를 맞추기 위한 부실공사 등으로 계약목적물의 품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음을 고려할 때 개정안처럼 합리적인 이행기간을 산정함으로써 국가계약의 공정성과 계약목적물의 품질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155쪽에 다만, 개정안은 일 단위로 정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는데 사실 주 단위나 월 단위 등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적용 대상을 전체 계약으로 확대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156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저희 수정의견 보시면 개정안에 ‘계약을 체결할 때 그 이행기간을 일 단위로 정하는 경우’를 ‘체결하는 경우’로 하고 ‘충분한 이행기간’이라는 표현을 ‘적정한 이행기간’으로 수정의견을 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정부 의견이요.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1항에 대해서는 일 단위가 필요 없고 모든 것에 다 하자는 취지에 동감합니다. 그래서 1항 수정하신 의견에 대해서는 전문위원 의견을 수용합니다.

다만 2항의 경우는 그대로 두셨는데요, 2항의 내용을 보면 구체적인 것을 직접 대통령령으로 정하라고 돼 있는데 사실 계약의 범위가 너무 다양합니다. 예를 들면 청소용역부터 경비, 거기서부터 공사, AI 개발, 소프트웨어까지 굉장히 많은 걸 여기에 다 담기에는 저희가 일률적으로 대통령령에 담을 수 있을까 싶어서, 사실상 대령의 위임이 필요 없지 않을까요?

이 2항을 없애 주시면 이렇게 될 경우에는 각 발주기관이 이 규정에 맞춰서 적정한 기간을 보장하도록 하면 되는 사항이라 저희는 이 2항 부분은 삭제를 요청드립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의견이요.

박수영 위원님.

○박수영 위원 주 단위, 월 단위도 똑같은 얘기라고 그랬는데 주나 월 단위로 하는 경우는 사실 여유가 좀 있거든요. 이게 일 단위로 넣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일 단위로 넣었는데 연휴가 딱 끼었다. 7일 뒤까지 자료를 내야 되는데 규정 연휴가 끼었다 이러면 못 하기 때문에 들어간 거예요.

지금 수정의견처럼 고쳐 놓으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적정한 이행기간을 산정하여야 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무슨 조항인지가 뜻이 안 살아나는 거 아니냐. 왜 이 조항을 신설했는지가 아예 안 살아날 우려가 있어요.

그러니까 월 단위, 주 단위를 염려하시는 건 알겠는데 문제가 가장 큰 일 단위의 경우에는 보다 분명하게 법에 규정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게 제 말씀이고요. 그렇게 하는 경우에 2항은 없애도 된다, 이게 맞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주나 월로 하면 훨씬 낫거든요. 3주 후에 하는데 그것까지 감안해 가지고 충분한 기간이 없다고 이렇게 주장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차관님, 제 그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습니까?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위원님 취지는 저도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법상으로는 1항을 해도 어차피 일 단위는 다 작동되는 규정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는데요. 다만…… 좀 더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 단위를 이렇게……

○박수영 위원 일 단위 이렇게 하면 나는 공무원들이 아무것도 안 할 것 같아.

○박대출 위원 뭐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박수영 위원 지금 하는 대로 그냥 할 것 같아요.

제가 공무원이라면 체결하고 있는데, ‘적정한 기간 내가 줬어. 법대로 7일 주라 하니까

7일 줬어' 이렇게 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것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의원님이 내신 개정안의 취지가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조인철 위원** 저도 박 위원님 의견에 공감을 하는데요. 이렇게 해 놓으면, 수정안대로 하면 그냥 선언적 의미로 읽힐 가능성이 훨씬 더 커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 단위로 했을 때 너무 짧게 줘서 사고 나지 않게 해 달라라는 취지가 있는 것 같아서 일 단위로 한정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고 2항도 살려서 거기에 대한 시행령을 제대로 만들어 달라 이런 취지인 것 같아서 원래 안대로 가는 게 더 나아 보이는데요.

○**재정경제부조달계약정책관 이주현** 보완설명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누구시지요?

○**재정경제부조달계약정책관 이주현** 재정부의 조달계약정책관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 단위로 정하는 경우에 저희가 한정하자라는 의미가 아니라 일 단위 말고 분기나 반기, 기성 단위로 하는 모든 계약에 적용한 이행기간을 두고자 넓게 받는 의미이고요.

다만 2항을 시행령에 일단 위임할 경우에 저희가 정할 수 없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건설공사와 관련된 근거 같은 경우에도 개별법에 근거를 두고 일 단위를 포함해서 가이드라인을 다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가 둔다고 해서 일 단위로 한정하는 의미가 아니라 일 단위를 포함하는 기성고 혹은 월 단위 단순노무, 분기나 반기의 장기계속계약까지 모두 포함하는 의미가 들어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인철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수정안대로 고쳐 놓으면 다 해당된다라는 이야기잖아요. 이렇게 해 놓으면 거의 선언적 의미로 저는 들려진다는 거예요. 이걸 왜 개정했지?

그래서 원래 일 단위로 줬을 때 10일 내에 해라, 15일 내에 뭐 해라라고 했을 때 그 비즈니스 타임을 고려해서 좀 줘라 이런 의미 같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것은 의미가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병병하게 해 놓으면 굉장히 선언적 의미로 들어서, 공무원들이 당연히 '적정한 시간 줄게' 이 정도로밖에 안 들린다는 거예요.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위원님, 이것은 저희한테 검토 시간을 좀 더 주시는 게 안 낫겠다 싶습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이것은 제가 봐도 박수영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수정의견을 내놓으니까 뜻이 없어져 버렸어.

다음이요.

○**전문위원 임명현** 제10항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162쪽입니다.

지방교부세법 인용 조항 정비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2014년 지방교부세법 개정으로 동 법 제5조제2항에 규정되어 있던 교부세 정산에 관한 내용이 5조 3항으로 이동되었으므로 이를 인용하는 현행법 조문을 이동된 조문에 맞춰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특별한……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전문위원 임명현 자료 168쪽입니다.

개정안은 기획예산처장관이 한국재정정보원에 위탁하는 업무 범위에 현장점검 업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오른쪽의 검토의견 보시면 현재 기획예산처는 재정정보원에 부정 수급 현장점검 업무 위탁을 위한 예산을 출연금으로 편성하고 있는데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다만 부정 수급 의심 사업의 실제 해당 여부를 검사하는 점검 업무하고 점검 과정에서 집행내역 등을 현장에서 직접 검사하는 현장조사 업무가 구분되므로 이를 반영해서 169쪽의 수정안 보시면 ‘부정 수급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점검 및 현장조사 업무’로 위딩을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정부 의견이요.

○박수영 위원 김영진 의원님 법안입니다.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위원장 정태호 정부 의견이요.

○기획예산처차관 임기근 김영진 의원님께서 이런 법안을 발의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방금 재경위, 사무처에서 수정의견 주신 것에 대해서도 100%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그다음에.

○전문위원 임명현 12항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178쪽입니다.

개정안은 조달청장이 비축물자의 활용 가능성, 잔여 유통·사용기간, 보관·관리비용 등을 고려해서 비축물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익적 목적에 한해서 비축물자를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현행법은 비축물자를 무상으로 수요기관이나 민간업체에 제공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끝에 보시면 참고로 조달청 비축물자 중에서 현재 보건용 마스크를 예로 들면 최근 수요 부진 및 유통기한 임박에 따라서 재고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무상방출을 허용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179쪽의 검토의견 보시면 비축물자에 대한 무상방출 근거를 마련해서 유통기한이 도래한 비축물자 관리·폐기에 따른 예산 절감 효과가 있을 거고 공익적 수요처에 대한 마스크 무상제공을 통해서 공익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다만 공익적 목적의 범위가 불분명한 측면이 있으므로 ‘인도적 지원, 재난 및 경제상 위기에의 대응’과 같이 법률에 명시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180쪽입니다.

또한 개정안은 비축물자의 유상판매 원칙에 예외를 두는 사항이므로 지금 개정안에서 29조를 고치려고 하는 건데 30조를 개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에서 수정안처럼 30조 단서로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수정의견을 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정부 입장요.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이 법안은 정태호 의원 발의안입니다. 저도 감사드리는 사항입니다. 내용에 대해서 동의하고요.

다만 전문위원님께서 문구를 수정해 주셨는데 수정안 내용에도 저희는 동의를 합니다. 딱 하나, 조문의 위치를 변경하는 안을 제안하셨는데 저희는 원래 의원님 안처럼 29조가 조금 더 나아 보이기는 합니다. 사실은 어디 있더라도 어차피 법은 똑같기 때문에 관계는 없는데 조금만 말씀드리면 29조는 공급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고 30조로 가면 그것을 공급할 때 유상으로 가면 판매가격을 어떻게 정할 거냐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정태호 의원님 제안은 무상으로 줄 수 있는 방안을 넣은 것이기 때문에, 한편 판매가격의 예외니까 전문위원님처럼 판매가격을 30조로 수정해도 되지만 제가 볼 때는 판매가격으로 가기 전에 무상으로 가는 루트기 때문에 29조가, 원래 의원님 안이 좀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진성준 위원** 29조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그러면 정부안으로 동의합니다.

다음요.

○**전문위원 임명현** 제13항부터 제15항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법입니다.

190페이지입니다.

개정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모경중·위성곤·염태영 의원안은 사회기반시설을 타인에게 임대하는 등 사용하게 하려는 경우에 해당 사회기반시설의 귀속시설 여부, 귀속 시기, 무상 사용기간 및 소유·수익기간을 사회기반시설의 임차인 등에게 고지하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추가적으로 염태영 의원안의 경우에는 임대기간 및 상기 고지사항이 명시된 계약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검토의견입니다.

사회기반시설 임대차계약은 사업시행자의 관리운영권 잔여기간에 따른 제약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이를 계약상대방에게 알릴 의무가 부재하여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보장되는 계약갱신요구권 등이 무력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 강남구 민간투자사업에서 피해자들이 2025년도 국토위 국감장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해서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가 있었습니다.

191쪽 상단입니다.

다만 실시협약 변경 시 고지정보의 업데이트 의무를 명확히 하는 등 실무적인 보완책을 병행하여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또한 오른쪽 표를 보시면 모경중 의원안, 위성곤 의원안은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려는 경우’로 해서 굉장히 폭넓게 규정하고 있는데 염태영 의원안은 임대로 한정했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사용하게 하려는 경우’로 하면 불특정 다수이용자에게 고지해야 될 의무가 발생해서 이것은 너무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겠다 해서 임대하는 경우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추가적으로 고지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제재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염태영 의원안처럼 임대기간 및 고지사항이 명시된 계약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도록 할 경우에 주무관청이 시설 내 임대차 현황을 사전에 파악함으로써 시설 귀속 시점에 발생할 수 있는 명도 분쟁 및 임차인 피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민간투자사업 운영 전반의 투명성과 관리·감독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만 문제가 계약서 제출 과정에서 임대료 등 영업비밀이나 개인정보 노출 우려가 있으므로 계약서 전체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보다는 입법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의 정보로 한정해서 신고하도록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193쪽의 수정안 예시 5항을 보시면 ‘사업시행자는 제4항에 따라 해당 시설을 타인에게 임대하려는 경우’로 이렇게 임대료 정했고요. 그럴 경우에 ‘임차하려는 자에게 해당 시설의 귀속시설 여부, 귀속 시기, 제1항 또는 제2항의 무상 사용기간, 소유·수익 기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하고 이 경우 실시협약의 변경 등으로 고지한 내용이 달라진 때에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서면으로 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6항 보시면 염태영 의원님 안의 계약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은 저희가 이렇게 고쳤습니다. 끝 부분에 보시면 ‘임대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한정시켰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정부 의견요.

○기획예산처차관 임기근 사회기반시설을 사용·수익하는 국민에게 알권리를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동 개정안의 내용을 수용하고요.

그리고 재경위 사무처에서 또 추가적으로 의견을 주신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용이라고 하게 되면 너무 광범위하니 임대료 한정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과태료 부과 등 제재방안이 필요한 것 같다. 그리고 사적 영역인 임대차계약서 제출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노출될 우려가 있으니 범위의 정보로 한정하는 게 좋겠다라는 세 가지 의견을 주셨는데요. 재경위 사무처에서 주신 세 가지 의견에 대해서 정부도 동의합니다.

다만 195페이지에 보시면 부칙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첫 번째 네모는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조항이 있고요. 그 밑에 보면 ‘타인에게 사회기반시설을 사용하게 하려는(임대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함’이라고 돼 있는데 재경위 사무처 의견대로 사용보다는 범위를 좁혀서 ‘임대하려는’으로 한정한다면 여기 있는 ‘사용하게 하려는’ 이 문구를 지우고 바로 그냥 ‘사회기반시설을 임대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함’ 이렇게 문구를 바꾸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위원님들 의견요.

○박대출 위원 잘 몰라서 그러는데 민자건물을 이룰테면 강남에 있는 게 뭐가 있지요? 몰라서 묻는 거예요.

○기획예산처재정투자심의관 고재신 주 시설은 주차장 시설이었습니다.

○박대출 위원 아, 주차장?

○기획예산처재정투자심의관 고재신 예, 논현동에 있는 주차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위로 5층짜리 건물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피트니스센터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계약기간이 사실은 사용기간보다 1개월 정도가 더 뒤에 있어 가지고, 이게 이미 기부채납이 돼 가지고 넘어간 이후에 바로 퇴거를 하라고 강남구청에서 명령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사용기간을 모르는 상태에서 임대차계약이 체결됐기 때문에 임차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당하다고 느낄 수 있는 사안입니다.

○박대출 위원 많이 부당한데?

○박수영 위원 그래서 개정하는 겁니다.

○박대출 위원 그런데 이것은 고지만 하면 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 거잖아요? 보호의무가 없는 것 같은데……

○전문위원 임명현 그런 건 아니고 일단 알아야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미연에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박대출 위원 그러면 피해구제 내용으로는 미흡한데……

○진성준 위원 그런 피해를 예방하자고 하는 법이지요. 기왕에 있던 것이야 어쩔 수 없고.

○박대출 위원 그렇긴 한데 고지하면 그만이지 않아요, 고지만 해 주면.

○진성준 위원 고지를 해 줘야지요. 알려 줬으니까……

○박대출 위원 고지해 가지고, ‘너 나가라’ 퇴거명령을 내려 버리고 고지해 주는 걸로 끝나 버리고……

그러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못 받나요?

○기획예산처재정투자심의관 고재신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계약을 체결할 때 이미 사용기간을 알려 줘야 되는 겁니다.

○박대출 위원 그러니까 사용기간 알려 주고 고지하는 거고 상가임대차는 10년까지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이건 고지하는 걸로 끝나 버려 가지고 고지했으니 너는 계약기간 끝났으니까 나가라 하는 거잖아요.

○전문위원 임명현 그런 경우에는 계약을 신중하게 하라는 겁니다.

○기획예산처기획조정실장 김명중 계약을 체결하려고 할 때 고지를 하면 그걸 알고 있으면 계약 체결을 안 할 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박대출 위원 제가 여쭙보는 것은 사회기반시설이 민간투자자로 지은 시설에 있는 건물이다. 그러면 이것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안 받는 건가요?

○기획예산처차관 임기근 그때는 임대차계약이 없는 거지요.

○박대출 위원 아, 없는 상태다?

○기획예산처차관 임기근 그렇지요. 계약이 없는 상태에서 내가 지금은 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데 연말 되면 강남구청으로 넘겨 주게 돼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와서 내 건물을 빌려 쓴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연말이 되면 내 소유가 아니고 이것 강남구청에 넘어갑니다라는 사실을 계약하러 오는 사람한테 알려 주고 그 사람한테 계약을 맺을 건지 말 건지 선택권을 줘야 되는데 그것 자체를 얘기를 안 하고 이게 연말이면 강남구청으로 넘어간다고 얘기를 안 해 줬다는 거지요.

○박대출 위원 그러더라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10년 보호가 되잖아요. 그게 되냐 이거지.

○진성준 위원 안 그래요. 그것은 안 그렇지요.

○박대출 위원 안 돼요?

○전문위원 임명현 그건 안 됩니다.

○기획예산처재정투자심의관 고재신 적용을 안 받습니다.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상가임대차법에 앞서서 개별법, 공유재산법이 적용돼서 상가임대차법에 따른 임차승인은 되지 않습니다.

○박대출 위원 그러면 보호대책도 아니네, 고지해 주는 것 외에는.

○기획예산처차관 임기근 그러면 그 사실을 알고 연말까지 의사결정을 하는 거지요.

○박대출 위원 너 알아라, 쫓겨날 수도 있는 건물이다 이것 얘기해 주는 것밖에 없는 거네?

○기획예산처차관 임기근 그렇지요. 연말까지라도 쓸 건가 아니면 내가 바보같이 그것을 내년까지 계약하는 그런 일은 막는 거지요.

○박수영 위원 차관님 말씀 같은 사례를 따지면 굳이 서면으로 고지해야 될 필요는 없는 것 아닌가요? 계약하러 왔을 때 이것은 강남구청에 2년 뒤에 돌려줘야 된다고 말하고 계약서에 넣으면 되는 것 아닌가요? 서면으로 고지를 꼭 해야 되는 건가요?

○기획예산처차관 임기근 그런데 서면으로 고지를 하는 게 확실하겠지요. 구두로 그것을.....

○전문위원 임명현 뒤에 과태료 부분도 있어서 이걸 명확하게 하는.....

○진성준 위원 그렇지. 고지를 했는지 안 했는지 분쟁도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구두로만 하게 되면.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임명현 저희가 당초 수정안에, 다시 이것 한번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5항에 보시면 ‘임대’ 하고 팔호 하고 전대차를 포함한다고 했는데.....

○소위원장 정태호 몇 페이지?

○전문위원 임명현 193쪽, 전대차를 포함시키면 사업시행자가 전대까지 다 알기가 힘들다는, 그래서 이것은 빼는 게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그렇게 통과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안건은 심의가 다 끝났는데요.

○진성준 위원 의결하셔야지, 의결.

○소위원장 정태호 아니, 제가 정리를 하고 가야지.

○전문위원 임명현 외국환거래법 아까 간사님들 말씀드려 가지고 이전 관련해서 정리한 문구가 있는데 박수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의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의 매도·매수·교환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위하여 대한민국과 외국 간에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것’ 이렇게 문구를 재정부하고 합의해서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나목은 아까 똑같은.....

○박수영 위원 그러니까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인용하지 아니하고 거기에 들어가 있는 양태인 매매·교환 이걸 다 포함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지요?

○전문위원 임명현 그렇습니다.

○박수영 위원 그러면 불완전한 법률을 인용하는 것보다는 더 나올 수 있다, 우리 법은 또 다른 법이니까. 그렇게 정리된 것 같습니다.

○진성준 위원 ‘행위를 위하여’예요, ‘행위를 통하여’예요?

○박수영 위원 전문위원님, 지금 조문이 어떻게 정리됐나요?

○진성준 위원 ‘매도·매수·교환 및 그 밖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위하여’야, ‘정하는 행위를 통하여’야?

○박수영 위원 ‘통하여’ 같은데요.

전문위원님, 어떻게 정리돼 있나요?

○소위원장 정태호 다시 읽어 보면 되잖아요.

○박수영 위원 ‘통하여’가 맞는 것 같은데?

○소위원장 정태호 다시 읽어 보세요.

○재정경제부국제금융국장 이형렬 그것은 큰 관계는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의도한 바는 가상자산으로 경상거래나 자본거래 대금을 지급하는 거래가 늘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수출입을 하면서 가상자산으로 대금을 지급하거나 받는 그런 것들은 외국환거래법을 우회하는 거래이기 때문에 모니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시행령에 넣으려고 하는 겁니다.

○박수영 위원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재정경제부국제금융국장 이형렬 그래서 ‘위하여’나 ‘통하여’ 다 괜찮습니다.

○전문위원 임명현 그러면 ‘통하여’로 하는 게 문구가 좀 더 매끄러운 것 같습니다.

○박수영 위원 읽어 봐요. 다시 한번 읽어 보세요.

○전문위원 임명현 다시 읽겠습니다.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의 매도·매수·교환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통하여 대한민국과 외국 간에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것’.

○소위원장 정태호 그렇게 하시지요.

○박수영 위원 저는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박대출 위원님.

○박대출 위원 그래도 내가 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소된 건 아니야.

○진성준 위원 그것은 외국환거래법이 아니라니까. 그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서 다뤄야 될 문제 같습니다.

○박수영 위원 다른 위원회 법률이라서 그런데 박대출 위원님 불편하시면 부대의견이라도 넣어 가지고 이게 좀 혼란스럽다는 의견을 넣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그렇게 하지요.

○박대출 위원 부대의견 넣어 주세요. 이 법체계의 ‘이전’이라는 용어가, 여기 썼다가 저기 썼다가 이전 이전이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박수영 위원 그러니까 우리 법이 아니라서 그런데 부대의견에 넣어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그러시지요. 고맙습니다.

그러면 우선 아까 전락수출기금법에서는 기여금 부분에 대해서 아직 합의가 안 됐거든

요. 그 부분은 제가 간사님하고 협의해 가지고 차관님하고 같이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 끝나자마자.

○전문위원 임명현 예, 전달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그래서 그게 해결이 돼야 내일 아침에 이 전략수출기금법을 통과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내일 아침에 전체회의가 10시에 예정이 돼 있는데…… 한 30분 전에 모여도 되나?

○진성준 위원 9시 반에 소회의해야 될 것 같은데요.

○소위원장 정태호 오늘은 소위를 다시 소집하기는 어렵고.

전문위원님, 30분 전에 해 가지고 만약에 소위에서 합의가 되면…… 30분 전에 하면 되지요. 그렇지요? 되는 걸로 해서 준비를 해 놓으세요.

○전문위원 임명현 예.

○소위원장 정태호 나머지는 오늘 의결을 하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내일 전체회의에서 일단 통과시키는 걸로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이상 3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하되 부대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15항까지 이상 3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의결한 내용에 대한 자구 정리 등은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일 재정경제부1차관, 임기근 기획예산처차관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와 임명현 전문위원 등 위원회 직원 그리고 보좌진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8분 산회)

○출석 위원(10인)

권영세 김영진 박대출 박수영 정태호 조승래 조인철 진성준 차규근 최은석

○청가 위원(1인)

박민규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명현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재정경제부

제1차관 이형일

기획조정실장 김후진

혁신성장실장 민경설

국제금융국장 이형렬

전략경제정책관 고광희

조달계약정책관 이주현

기획예산처

차관 임기근

기획조정실장 김명중

재정투자심의관 고재신

국고보조금부정수급관리단장 강대현